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1년 6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743 호

##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장 군산시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다.

제3조(인증표시 및 방법) ①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함)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군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 · 품질 인증의 표시 · 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인증대상 및 기준) ① 인증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②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급·가공된 축산물
3. 가공품 : 원·부재료를 군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부재료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며, 군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가공품의 특성상 군산시에 식품가공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③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군산시 소재 음식점 또는 외식업체는 원·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품목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재료 사용비율에 따라 인증단계를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인증 단계) ① 농산물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5단계로 부여하며 1·2단계 인증 농산물 등은 로컬푸드직매장에 3·4·5 단계 인증 농산물 등은 로컬푸드와 연계된 전체 매장에 출하 할 수 있다. 단, 2·4·5단계 인증 농산물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우수관리 인증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인 기관으로 부터 받은 친환경 인증을 인정하여 인증단계를 부여한다.

1. 1단계(예비단계)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2단계(GAP)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이며,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적정시비량을 준수한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3. 3단계(무제초제)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PLS)에 의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로,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적정시비량을 준수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4. 4단계(무농약)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화학비료를 적정시비량의 1/3 수준이하로 사용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농약인증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5. 5단계(유기농) :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반드시 재배농지에 대해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아 유기질비료로 적정시비량을 준수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인증 농산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다.
- ③ 가공품은 제1항 각호에 따른 단계별 원·부재료 중 식재료 비중이 10% 이상인 농산물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의 인증 단계를 적용한다.
- 제6조(인증 신청) ① 군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산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군산 로컬푸드 인증 교육 확인서
3. 신청 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4. 원·부재료 군산 로컬푸드 인증 확인서(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해당자)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받은 증명서류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다.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마.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하는 식품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신청 제한) 제1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에는 인증 신  
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 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  
해야 한다.

제10조(인증 취소) ① 시장은 인증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의  
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시 인증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및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농산물 통보일로 하며, 부적합 사항은 1년간 누적된다.

제11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군산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제4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인증심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두며, 인증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 등 시료 채취
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③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심사) 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생산 품목별 연 2회 이상 현장 심사를 한다.

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6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 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공인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3. 무항생제, 유기축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취급·가공된 축산물
  4. 원·부재료를 군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 제17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해 군산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산 로컬푸드 인증여부, 인증정지 및 취소에 대한 심의 의결
  2. 그 밖에 위원장의 인증 관련 심의 요구 사항
- ③ 심의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은 군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공무원, 농업인단체, 임직원, 생산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⑤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인증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 생산·유통단계에서 연 2회 이상 토양·농작물 등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3조제1항 관련) 군산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

1. 모양 및 색상



2. 도안의 설명

가. 두 사람이 마주 보고 함께하는 모습의 형상은 군산로컬푸드와 관련된 생산자, 매개자 (유통, 협력, 지원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소비자를 형상화한 상징물로 상호 연결하여, 군산 로컬푸드 관련자 모두가 하나되어 상생, 화합하며 발전해 나아감으로 행복하다는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나. 1) 상징물의 기본 컬러인 그린은 자연의 신선함에서 오는 먹거리의 안전함에 대한 신뢰의 의미를 담고 있다.

2) 생산자는 좌측의 그린 컬러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를 상징하고 우측의 오렌지 컬러는 만족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행복한 미소를 형상화하였다.

다. 생산자, 소비자가 만족해하며 미소던 얼굴은 서로 상생하고 나아가 “더불어 함께 한다”는 내용을 친근감 있게 표현하였다.

라. 군산로컬푸드의 의의와 비전을 전체적으로 “상생”, “화합”, “신뢰”, “행복”의 이미지로 담아 형상화 하였다. 관련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창작이 가능하며 각종 홍보 등에 차별화된 전달력을 기대 할 수 있다.

3. 인증표시 문자

글씨체는 고딕 계열을 사용함으로써 군산로컬푸드 인증의 신뢰감을 높이고 슬로건이나 각종 적용 대상물과 서로 안정감 있게 어울릴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시인성이 강한 글씨체를 사용한다.

**4. 매뉴얼**

- 가. 작도는 매뉴얼의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 확대해야 한다. 특히 상표의 재현 및 복사는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 나. 매뉴얼 규정 내용을 참조하여 본 상징물을 활용하고, 규정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변형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별도 논의 후 제한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5. 인증번호 부여 방법**

- 가. 군산로컬푸드 상표 아래 인증번호를 추가 사용한다.
- 나. 인증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  
(인증연도) (분류번호) (일련번호) (인증단계)
  - 인증연도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연도를 표기한다.
  - 품목별 분류번호는 “별표2”의 “분류번호”에 의한다.
  -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의하여 부여한다.
  - 인증단계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 다. 인증단계는 상표 아래에 막대 형태로 색칠하여 표시한다.
  - 농산물은 5단계, 음식점은 3단계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 1단계 인증의 경우, 인증 상표 아래에 첫 번째 칸을 색칠하여 표시

|   |   |   |   |   |
|---|---|---|---|---|
| 1 | 2 | 3 | 4 | 5 |
|---|---|---|---|---|

|   |   |   |
|---|---|---|
| 1 | 2 | 3 |
|---|---|---|

**※ 예시**

- 2021년도에 과실품목 “배”를 1단계 인증을 첫 번째로 받은 경우 『2021 - 02 -0001 - I』 으로 표기한다.

[별표2] (제4조 관련)

##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

| 품목군별        | 분류번호 | 분류군별      | 작 물 명  | 비고 |
|-------------|------|-----------|--|----|
| 식량작물        | 01   | 곡 류       | 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옥수수, 조, 수수, 메밀 등   |    |
|             |      | 서 류       | 감자, 고구마, 토란 등  |    |
|             |      | 콩 류       | 대두, 녹두, 완두, 강낭콩, 팥 등   |    |
| 과 수<br>(수실) | 02   | 인과류       | 사과, 배, 모과, 감, 석류 등   |    |
|             |      | 감귤류       | 감귤, 오렌지, 자몽, 레몬, 유자 등  |    |
|             |      | 핵과류       | 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넥타린, 앵두 등   |    |
|             |      | 장과류       | 포도, 무화과, 오디, 산딸기, 참다래, 머루, 블루베리 등  |    |
|             |      | 수실류       | 밤, 호도, 잣 등   |    |
| 채 소         | 03   | 엽채류       |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양상추, 시금치, 들깻잎, 쑥갓, 아욱, 근대, 엔디브, 케일, 파슬리, 취나물 등  |    |
|             |      | 엽경채류      | 파, 부추, 미나리,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고사리, 치커리 등  |    |
|             |      | 근채류       | 무, 양파, 마늘, 당근, 생강, 연근 등  |    |
|             |      | 박 과 채소류   |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멜론 등   |    |
|             |      | 박과이외 과 채류 |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착색단고추 (파프리카), 피망 등   |    |
|             |      | 새 싹 채소류   | 콩나물, 녹두나물, 무순 등  |    |
| 약용작물        | 04   | 약 용 작물류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울무(익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초, 배초향(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 둥굴레(위유), 강활, 결명자, 두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고본, 식방풍, 황정, 개똥쑥, 애엽, 단삼, 익모초, 모과, 소엽, 만삼(당삼), 현삼, 헛개나무, 녹차잎 등 |    |
| 특용작물        | 05   | 유 지 종실류   | 참깨, 들깨, 땅콩 등   |    |
| 버 섯         | 06   | 버 섯류      |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목이 등   |    |
| 가공품         | 07   | 가공품류      | 반찬류, 장류, 잼류, 떡, 한과류, 드레싱소스류, 음료류 등   |    |

\* 품목군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별표3] (제12조 관련)

### 인증 절차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절차  |
|---|--|---|
|   | 농업기술센터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인증 신청<br/>(인증 교육 이수)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서류검토 및 접수<br/>: 해당부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br/>: 인증 심사원</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시료 분석 : 해당부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심의 의결 : 인증심의위원회</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결과통지 : 해당부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사후관리 : 해당부서</div>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장심사 일자 통보<br/>- 현장심사 계획 수립</li> <br/> <li>2. 현장심사 및 시료수거<br/>- 농산물, 토양 (각 1점)</li> <br/> <li>3. 시료 분석</li> <br/> <li>4. 심의위원회 제출</li> <br/> <li>5. 결과 통지</li> <br/> <li>6. 사후 관리<br/>- 생산(농업인 요청) 및 유통단계(랜덤) 검사</li> </ol>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top: 10px;">인증번호<br/>사 용 ←</div>            |  |   |

[별표 4] (제15조 제1항 관련)

## 현 장 심 사 표

|                   |       |                           |       |       |    |
|-------------------|-------|---------------------------|-------|-------|----|
| 농 가 명             |       | 인증<br>단계                  | 1~5단계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휴대전화  |    |
| 작 목               |       |                           |       | 집 전 화 |    |
| 항 목               | 배 점   | 내 용                       |       | 평 점   | 비고 |
| 1. 농작물 재배(20점)    | 0~20점 | ○ 신청한 작물 및 재배지 등 일치       |       |       |    |
| 2. 비료 보관 관리(20점)  | 0~20점 | ○ 강우시 유출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 관리 |       |       |    |
| 3. 유기합성농약 관리(20점) | 0~20점 | ○ 시건장치, 제조제 구분 관리         |       |       |    |
| 4. 환경보전 (20점)     | 0~20점 | ○ 폐농자재(농약병,비닐 등) 관리       |       |       |    |
| 5. 수확 후 관리(20점)   | 0~20점 | ○ 운반포장 및 작업장 관리           |       |       |    |
| 계                 | 100점  | ※ 평점 60점 이상 시 적합으로 판정     |       | 점     |    |

군산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

동의자 : (인)

현장 심사일 20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13조 관련)

## 군산 로컬푸드 인증서

|        |  |          |       |              |  |
|--------|--|----------|-------|--------------|--|
| 인증번호   |  | 인증<br>단계 | 1~5단계 | 유효기간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
| 연락처(집) |  |          |       | 휴대전화         |  |
| 생 산 지  |  |          |       |              |  |
| 인증품목   |  |          |       | 재배면적<br>(규모) |  |

『군산로컬푸드 통합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단계 군산 로컬푸드 인증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군산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6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744 호

군산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규칙 폐지규칙

군산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1년 6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745 호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 을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지도기획담당지도사” 를 “업무담당지도사”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조례제6조제2항” 을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을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의”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p>제1조(목적) ----- <u>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u>-----<br/>-----<br/>-----.</p>  |
| <p>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① <u>고장 농기계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4의 부표 2에 준하여 확보한다.</u></p> <p>② (생 략)</p>  | <p>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lt;삭 제&gt;</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p> <p>1. (생 략)</p> <p>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u>지도기 획득담당지도사</u></p> <p>② (생 략)</p>                                | <p>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br/>-----<br/>-----.</p> <p>1. (현행과 같음)</p> <p>2. ----- <u>업무담당 지도사</u></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7조(불용품 폐기) ① <u>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한다.</u></p> <p>② 불용 결정은 <u>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장이 불용 처분한다.</u></p> <p>③ (생 략)</p> | <p>제7조(불용품 폐기) ① <u>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u>-----<br/>-----<br/>-----.</p> <p>② ----- <u>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의</u>-----<br/>-----.</p> <p>③ (현행과 같음)</p>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1년 6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746 호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 지원한다. 단,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5. (생략)</p> <p>6.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p> <p>가. (생략)</p> <p>나. <u>관내 공립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로 상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 지원한다.</u></p> <p>다. (생략)</p> <p>7. (생략)</p> <p>② (생략)</p> |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br/>-----<br/>-----.</p> <p>1. ~ 5. (현행과 같음)</p> <p>6. -----<br/>-----<br/>-.</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 지원한다.<br/><u>단,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u></p> <p>다.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군 산 시 장



2021년 6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 747 호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악장 및 상임단원**” 을 “**상임단원**” 으로, “**매년 12월중**” 을 “**12월중**”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근무실적평가는 1년, 실기능력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제2항 중 “**2호봉 감봉**” 을 “**경고**” 로, “**해촉**” 을 “**감봉, 연속 3회 시 해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6개월 이상휴직중(공상포함)단원
2. 임신 중인 단원, 법정 출산 휴가자와 공상휴가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애사시
4. 평정일 기준 당해연도 입단 단원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1-1259호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8조(환수)의 체납처분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규칙 관련 조항 일부 내용 삭제

포상금 환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함

- (현 행)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 (개정안)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우) 54078
- 전 화: 063-454-3244, FAX : 063-454-415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계(☎063-454-3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2.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 관련)

| 위 반 행 위  | 지 급 액                  |
|--|------------------------|
| 법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희를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20만원<br>유통관련업자 5만원 |
| 법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26조의2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 기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

[별표 1]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 관련)**

| 위 반 행 위   | 지 급 액                     |
|---|---------------------------|
|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20만원<br>유통관련업자<br>5만원 |
|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차·기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 기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

[별지 제2호서식] <개정2016.02.01>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   |                     |           |  |   |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 신고사항  | 신고일                 | 년 월 일 시 분 |  |   |
|   | 신고기관                |           |  |   |
|   | 피신고인                | 성명 또는 업소명 |  |   |
|   |                     | 주소 또는 위치  |  |   |
| 신고내용  |                     |           |  |   |
| <p>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군산시장 귀하</p> |                     |           |  |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p style="text-align: center;"><b>담당 공무원 확인사항</b></p> <p>(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p> |   |
|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 1. 주민등록초본 1부.  |   |
|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      |      |           |      |   |
|------|------|-----------|------|---|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 신고사항 | 신고일  | 년 월 일 시 분 |      |   |
|      | 신고기관 |           |      |   |
|      | 피신고인 | 성명 또는 업소명 |      |   |
|      |      | 주소 또는 위치  |      |   |
| 신고내용 |      |           |      |   |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b>담당 공무원 확인사항</b><br>(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1. 타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 1. 주민등록초본 1부.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6조에<br/>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br/>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u>지방세 부과</u><br/> <u>·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u> 의하여 기<br/>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p> | <p>제8조(환수) -----<br/>         -----<br/>         ----- 「지방재정법 시행령」 -----<br/>         -----<br/>         -.</p> |

군산시 공고 제2021-1260호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별 임기가 상이하어 각 읍면동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친 후 위원의 임기를 당해연도 연말까지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15일)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 (☎ 063-454-2245, FAX 454-2227)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자우편(cheolan777@korea.kr),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454-2245)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또는 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군산시 조례 호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 만료 기한을 당해 연도 연말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구성등) ① ~ ⑦ (생략)<br><u>&lt;신설&gt;</u> | 제17조(구성등) ① ~ ⑦ (현행과 같음)<br><u>⑧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u><br><u>위원의 임기 만료 기한을 당해연도 연</u><br><u>말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재적</u><br><u>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쳐야 한</u><br><u>다.</u> |

군산시 공고 제2021-1261호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위원별 임기가 상이하여 옥산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친 후 위원의 임기를 당해연도 연말까지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15일)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우) 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 (☎ 063-454-2245, FAX 454-2227)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자우편(cheolan777@korea.kr),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454-2245)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또는 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군산시 조례 호

##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를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수” 를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만료 기한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친 후 당해연도 연말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br/>-----<br/>-----<br/>-----<br/>-----.</p>  |
| <p>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 <p>제18조(위원의 임기) -----<br/>-----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 다만,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임기만료 기한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거친 후 당해연도 연말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p> |

군산시 고시 제2021-74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되어 운영중인 군산교육지원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1307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나. 명 칭 : 154kV 서군산변전소 옥내화 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구분             | 시설명        | 결정면적 (㎡)     | 대지면적 (㎡)     | 건축계획  |             |             | 비고 |
|----------------|------------|--------------|--------------|-------|-------------|-------------|----|
|                |            |              |              | 동 수   | 건축면적(㎡)     | 연면적(㎡)      |    |
| 전기<br>공급<br>설비 | 서군산<br>변전소 | 당초<br>18,228 | 당초<br>18,228 | 당초 4동 | 당초 311.72   | 당초 311.72   |    |
|                |            | 변경<br>17,205 | 변경<br>17,205 | 변경 5동 | 변경 1,283.12 | 변경 2,714.96 |    |
|                |            |              |              | 증 1동  | 증 971.4     | 증 2,403.24  |    |

- 4. 사업시행자
  - 가. 주 소 : 전라북도 나주시 전력로 55
  - 나.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연번 | 읍면동 | 지 번     | 지목 | 지적면적<br>(㎡) | 편입면적<br>(㎡) | 소 유 자        |                                  | 비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나운동 | 1305-2  | 답  | 1,193       | 1,193       | 한국<br>전력공사   | 전라남도<br>나주시<br>전력으로 55<br>(빛가람동) |    |
| 2  | 나운동 | 1305-3  | 구거 | 274         | 274         |              |                                  |    |
| 3  | 나운동 | 1304-5  | 대  | 662         | 662         |              |                                  |    |
| 4  | 나운동 | 1303-1  | 전  | 618         | 618         |              |                                  |    |
| 5  | 나운동 | 1304-2  | 답  | 165         | 165         |              |                                  |    |
| 6  | 나운동 | 1305-1  | 구거 | 245         | 245         |              |                                  |    |
| 7  | 나운동 | 1306    | 전  | 1,405       | 1,392       |              |                                  |    |
| 8  | 나운동 | 산173-3  | 임  | 694         | 694         |              |                                  |    |
| 9  | 나운동 | 172-1   | 임  | 595         | 595         |              |                                  |    |
| 10 | 나운동 | 1307    | 잡  | 3,742       | 3,742       |              |                                  |    |
| 11 | 나운동 | 1309-12 | 잡  | 196         | 196         |              |                                  |    |
| 12 | 나운동 | 산107-11 | 잡  | 9           | 9           |              |                                  |    |
| 13 | 나운동 | 산107-10 | 잡  | 3,074       | 3,074       |              |                                  |    |
| 14 | 나운동 | 1312    | 잡  | 2,684       | 2,675       |              |                                  |    |
| 15 | 나운동 | 1498-6  | 구거 | 1,511       | 1,511       | 국<br>(기획재정부) |                                  |    |
| 16 | 나운동 | 산172-2  | 구거 | 160         | 160         | 국<br>(기획재정부) |                                  |    |
| 계  |     |         |    | 17,227      | 17,205      |              |                                  |    |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75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군 산 시 장



###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21-00007호 (2021. 06. 01.)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미룡동)
  - 성명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③ 허가목적 : 해상풍력기 및 해저케이블 설치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 82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9,789.81㎡
- ⑥ 허가기간 : 2021. 06. 01. ~ 2026. 05.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1-76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군 산 시 장



###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17-00007호 (2021. 05. 20.)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 성명 : 군산시장(항만해양과)
- ③ 허가목적 : 해수욕장 운영관리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 56번지 해수욕장 일원
- ⑤ 면 적 : 186,742m<sup>2</sup>
- ⑥ 허가기간 : 2021. 06. 01. ~ 2025. 5.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21-77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나. 명 칭 : 농업 미생물 배양센터 증축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부지면적 : 19,341㎡
  - 나. 건축규모 : 건축면적 3,494.25㎡, 연면적 5,644.63㎡

| 구분  | 층별 | 당초     |      | 변경     |      | 비고 |
|-----|----|--------|------|--------|------|----|
|     |    | 면적(㎡)  | 용도   | 면적(㎡)  | 용도   |    |
| 주1동 | 1층 | 580.80 | 업무시설 | 580.80 | 업무시설 |    |
|     | 2층 | 580.80 |      | 580.80 |      |    |
|     | 3층 | 580.80 |      | 580.80 |      |    |
|     | 4층 | 430.10 |      | 430.10 |      |    |

| 구분  | 층별 | 당초                  |      | 변경                  |      | 비고 |
|-----|----|---------------------|------|---------------------|------|----|
|     |    | 면적(m <sup>2</sup> ) | 용도   | 면적(m <sup>2</sup> ) | 용도   |    |
| 주2동 | 1층 | 138.87              | 업무시설 | 138.87              | 업무시설 |    |
| 주3동 | 1층 | 425.02              | 업무시설 | 425.02              | 업무시설 |    |
|     | 2층 | 87.26               | 업무시설 | 87.26               | 업무시설 |    |
| 주4동 | 1층 | 555.78              | 업무시설 | 555.78              | 업무시설 |    |
|     | 2층 | 494.58              | 업무시설 | 494.58              | 업무시설 |    |
| 주5동 | 1층 | 147.29              | 업무시설 | 147.29              | 업무시설 |    |
| 주6동 | 1층 | 123.20              | 업무시설 | 123.20              | 업무시설 |    |
| 주7동 | 1층 | 303.83              | 업무시설 | 303.83              | 업무시설 |    |
| 주8동 | 1층 | 128.51              | 업무시설 | 128.51              | 업무시설 |    |
| 주9  | 1층 | 197.96              | 업무시설 | 197.96              | 업무시설 |    |
|     | 2층 | 72.52               | 업무시설 | 72.52               | 업무시설 |    |
| 주10 | 1층 | -                   | -    | 208.51              | 업무시설 | 신축 |
| 주11 | 1층 | -                   | -    | 488.00              | 업무시설 | 신축 |
| 부1동 | 1층 | 33.60               | 업무시설 | 33.60               | 업무시설 |    |
| 부2동 | 1층 | 33.60               | 업무시설 | 33.60               | 업무시설 |    |
| 부3동 | 1층 | 33.60               | 업무시설 | 33.60               | 업무시설 |    |
| 합계  |    | 4,948.12            |      | 5,644.63            |      |    |

##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나. 성 명 : 군산시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1.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No | 읍면동        | 지 번   | 지목 | 지적면적<br>(m <sup>2</sup> ) | 편입면적<br>(m <sup>2</sup> ) | 소 유 자 |     | 비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개정면<br>운회리 | 633-7 | 대  | 19,341                    | 19,341                    | 군산시   |     |    |

##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78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769-1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769-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나. 명 칭 :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서수면사무소) 재건축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부지면적 : 6,599m<sup>2</sup>
  - 나. 건축규모 : 건축면적 1,303.91m<sup>2</sup>, 연면적 1,878.82m<sup>2</sup>

| 구분 | 층별    | 건축물 세부현황            |                        | 비고 |
|----|-------|---------------------|------------------------|----|
|    |       | 면적(m <sup>2</sup> ) | 건축물 용도                 |    |
| 1동 | 지하 1층 | 140.43              | 기계실, 전기실, 수방자재창고, 공용공간 |    |

| 구분     | 층별 | 건축물 세부현황            |  | 비고 |
|--------|----|---------------------|--|----|
|        |    | 면적(m <sup>2</sup> ) | 건축물 용도   |    |
| 1동     | 1층 | 1,120.10            | 민원실, 건강증진실, 공유주방 및 빨래방, 농중활사무실, 공유사무실(1,2), 프로그램실(1,2), 작은도서관, 창의학습실, 임산부 휴게실, 화장실, 공용공간 |    |
|        | 2층 | 513.29              | 대강당, 중회의실, 창고/통신실, 화장실, 공용공간   |    |
| 2동     | 1층 | 99.00               | 소방차고   |    |
| 연면적 합계 |    | 1,732.39            |  |    |

##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나. 성 명 : 군산시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3.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No | 읍면동        | 지 번   | 지목 | 지적<br>면적<br>(m <sup>2</sup> ) | 편입<br>면적<br>(m <sup>2</sup> ) | 소 유 자        |                              | 비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서수면<br>서수리 | 769-1 | 대  | 3,504                         | 3,500                         | 군산시          |                              |    |
| 2  | 서수면<br>서수리 | 770-3 | 대  | 3                             | 3                             | 국<br>(기획재정부) | 전라남도 나주시<br>그린로 20<br>(빛가람동) |    |
| 3  | 서수면<br>서수리 | 771-1 | 임  | 1,788                         | 1,788                         | 한국<br>농어촌공사  | 전라남도 나주시<br>그린로 20<br>(빛가람동) |    |
| 4  | 서수면<br>서수리 | 771-4 | 임  | 1,308                         | 1,308                         | 한국<br>농어촌공사  |                              |    |

## 7.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79호

## 군산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신설)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11일

군 산 시 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 가. 환경기초시설

##### 1)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적(m <sup>2</sup>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19       | 하수도<br>(성산공공하수처리시설) | 군산시<br>성산면 고봉리<br>345-2번지 일원 | -                   | 증) 6,791 | 6,791 | -      |    |

#### 나.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 19       | 하수도<br>(성산공공하수처리시설) | · 하수처리시설 신설, A=6,791m <sup>2</sup> | · 군산시 성산 면단위 지역의 하수도 미처리지역 일원을 금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 거정비 공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1-80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군 산 시 장



### ■ 고시사항

1. 시 행 자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빛가람동)
3. 공사내용 : 부유식 해상기상관측기 설치
4. 공사장소 :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산141-1 인근 공유수면
5. 공사면적 : 2,551.8㎡
6. 공사기간 : 2021.06.01. ~ 2023.05.31.

군산시 고시 제2021-81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06. 10.

군 산 시 장



### ■ 고시사항

1. 시 행 자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2.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빛가람동)
3. 공사내용 : 부유식 해상기상관측기 설치
4. 공사장소 :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14 인근 공유수면
5. 공사면적 : 19,064.5m<sup>2</sup>
6. 공사기간 : 2021.06.01. ~ 2023.05.31

군산시 고시 제2021-82호

군산 미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미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 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11일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면표시<br>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1          | 군산 미장지구<br>지구단위계획구역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br>58-73번지 일원 | 864,284.9 | -  | 864,284.9 |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 류 별 | 합 계          |                    |                        | 1 류        |                   |                        | 2 류        |                    |                        | 3 류        |                  |                      |
|-----|--------------|--------------------|------------------------|------------|-------------------|------------------------|------------|--------------------|------------------------|------------|------------------|----------------------|
|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노선수        | 연 장              | 면 적                  |
| 합계  | 137<br>(127) | 32,375<br>(19,117) | 672,470<br>(276,967.0) | 18<br>(15) | 10,649<br>(5,105) | 289,038<br>(100,255.9) | 61<br>(56) | 17,897<br>(10,678) | 349,464<br>(145,135)   | 58<br>(56) | 3,829<br>(3,314) | 33,968<br>(31,606.1) |
| 대로  | 5<br>(4)     | 13,995<br>(3,289)  | 451,860<br>(96,383.4)  | 3<br>(3)   | 6,402<br>(2,206)  | 224,070<br>(60,433.2)  | 2<br>(1)   | 7,593<br>(1,083)   | 227,790<br>(35,950.2)  | -          | -                | -                    |
| 중로  | 37<br>(32)   | 9,963<br>(8,349)   | 154,138<br>(119,688.7) | 4<br>(3)   | 2,140<br>(1,270)  | 43,778<br>(22,869.8)   | 24<br>(21) | 5,574<br>(4,998)   | 83,983.3<br>(71,421.9) | 9<br>(8)   | 2,238<br>(2,061) | 26,468<br>(25,452.3) |
| 소로  | 95<br>(90)   | 8,417<br>(7,479)   | 66,472<br>(60,894.9)   | 11<br>(9)  | 2,107<br>(1,649)  | 21,190<br>(16,922.9)   | 35<br>(34) | 4,719<br>(4,577)   | 37,746<br>(37,818.2)   | 49<br>(48) | 1,591<br>(1,253) | 7,500<br>(6,153.8)   |

주) 1. 도로연장 및 면적 내용중 괄호안은 대상지내 연장임

나) 도로 결정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대로  | 1  | 1  | 35     | 주간선 도로  | 5,500 (1,304) | 문화동 광2-3 | 운회리 13호광장  | 일반 도로 | 6호공원종합운동장 | 건고525 (‘67.7.25)   | 가감속 차로설치 |
| 기정 | 대로  | 1  | 23 | 35     | 주간선 도로  | 460           | 대로 1-1   | 대로 2-6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대로  | 1  | 24 | 35     | 주간선 도로  | 442           | 대로 2-6   | 대로 2-2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대로  | 2  | 2  | 30     | 주간선 도로  | 1,746 (0)     | 경암동 대2-4 | 대로 1-21    | 일반 도로 |           | 건고525 (‘67.7.25)   | 지구외      |
| 기정 | 대로  | 2  | 6  | 30     | 보조간선 도로 | 5,847 (1,083) | 수송동 광2-3 | 개정동 대로 1-1 | 일반 도로 |           | 건고228 (‘86.5.23)   | 가감속 차로설치 |

※ ( )분은 지구내 연장임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115 | 20     | 집산도로    | 644       | 대로 2-6     | 중로 1-2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1  | 20  | 20~22  | 보조간선 도로 | 670 (428) | 수송동 대로 2-5 | 수송동 대로 2-6 | 일반 도로 |         | 군산고210 (‘96.6.1)   |               |
| 기정 | 중로  | 1  | 21  | 20~22  | 보조간선 도로 | 472 (0)   | 대로 1-1     | 대로 2-6     | 일반 도로 |         |                    | 지구외, 가감속 차로설치 |
| 기정 | 중로  | 1  | 60  | 20     | 집산도로    | 354 (198) | 대로1-21     | 중로 1-22    | 일반 도로 |         | 군산고210 (‘96.6.1)   |               |
| 기정 | 중로  | 2  | 161 | 15     | 국지도로    | 308       | 대로 1-24    | 중로 1-115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62 | 15     | 국지도로    | 35        | 대로 1-24    | 중로 2-163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63 | 15     | 국지도로    | 859       | 중로 2-6     | 중로 2-6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64 | 15     | 국지도로    | 146       | 중로 2-163   | 중로 2-167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65 | 15     | 국지도로    | 102       | 중로 2-164   | 중로 2-167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66 | 15     | 국지도로    | 109       | 대로 2-6     | 중로 2-167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67 | 15     | 국지도로    | 222       | 중로 2-163   | 중로 2-163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중로  | 2  | 168 | 15     | 국지도로 | 35      | 대로 1-24    | 중로 2-163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69 | 15     | 국지도로 | 60      | 중로 2-163   | 중로 2-164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70 | 15     | 국지도로 | 240     | 대로 2-6     | 중로 2-179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71 | 15     | 국지도로 | 237     | 대로 2-6     | 중로 2-18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72 | 15     | 집산도로 | 244     | 대로 2-6     | 중로 2-18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79 | 15     | 집산도로 | 572     | 대로 1-23    | 중로 1-21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80 | 15     | 집산도로 | 572     | 대로 1-23    | 중로 1-21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73 | 15     | 집산도로 | 205     | 대로 1-1     | 중로 2-179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74 | 15     | 국지도로 | 167     | 중로 3-89    | 중로 2-179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75 | 15     | 국지도로 | 168     | 중로 3-90    | 중로 2-18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76 | 15     | 집산도로 | 208     | 대로 1-1     | 중로 2-18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81 | 15     | 집산도로 | 193     | 대로 1-1     | 중로 2-18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77 | 15     | 특수도로 | 27      | 대로 1-1     | 중로 3-89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178 | 15     | 특수도로 | 27      | 대로 1-1     | 중로 3-90    | 보행자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2  | 23  | 15     | 집산도로 | 179 (0) | 미장동 중로1-20 | 소로 2-2     | 일반 도로  |         |                      | 지구외 |
| 기정 | 중로  | 2  | 29  | 15     | 집산도로 | 143 (0) | 중로 1-1     | 미장동 중로1-22 | 일반 도로  |         | 군산고210 ( ' 96.6.1)   | 지구외 |
| 기정 | 중로  | 2  | 30  | 15     | 집산도로 | 245 (0) | 미장동 대로2-6  | 미장동 중로2-13 | 일반 도로  |         | 군산고210 ( ' 96.6.1)   | 지구외 |
| 기정 | 중로  | 3  | 85  | 12     | 국지도로 | 155     | 중로 2-170   | 중로 2-3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3  | 86  | 12     | 국지도로 | 271     | 중로 2-170   | 중로 2-170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3  | 87  | 12     | 국지도로 | 270     | 중로 2-171   | 중로 2-171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3  | 88  | 12     | 국지도로 | 159     | 중로 2-171   | 중로 2-172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기정 | 중로  | 3  | 89  | 12     | 국지도로 | 404     | 중로 2-174   | 중로 2-173   | 일반 도로  |         | 군산고329 ( ' 11.10.28) |     |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br>(m)   | 기 점          | 중 점          | 사용<br>형태 | 주 요<br>경과지 | 최 초<br>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br>(m) |      |             |              |              |          |            |                       |      |
| 기정 | 중로  | 3  | 90   | 12        | 국지도로 | 414         | 중로<br>2-175  | 중로<br>2-176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중로  | 3  | 91   | 12        | 집산도로 | 87<br>(54)  | 중로<br>1-60   | 소로<br>2-500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중로  | 3  | 92   | 12        | 집산도로 | 334         | 대로 2-6       | 중로<br>2-180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중로  | 3  | 25   | 12        | 집산도로 | 144<br>(0)  | 중로<br>2-19   | 중로<br>2-14   | 일반<br>도로 |            |                       | 지구외  |
| 기정 | 소로  | 1  | 460  | 10        | 국지도로 | 220         | 중로<br>1-115  | 중로<br>2-23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1  | 196  | 10        | 국지도로 | 186         | 중로 1-20      | 소로<br>1-194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1  | 461  | 10        | 국지도로 | 125         | 소로<br>1-194  | 중로<br>1-115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1  | 462  | 10        | 국지도로 | 125         | 중로<br>1-115  | 중로<br>2-161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1  | 463  | 10        | 국지도로 | 25          | 소로<br>1-462  | 대로<br>1-21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1  | 464  | 10        | 국지도로 | 132         | 중로 1-60      | 중로<br>2-161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1  | 465  | 10        | 국지도로 | 227         | 소로<br>1-466  | 소로<br>1-466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1  | 466  | 10        | 국지도로 | 208         | 중로<br>2-180  | 중로<br>2-180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1  | 188  | 10        | 국지도로 | 192<br>(0)  | 소로<br>2-500  | 중로 1-1       | 일반<br>도로 |            |                       | 지구외  |
| 기정 | 소로  | 1  | 191  | 10        | 국지도로 | 55<br>(0)   | 중로 2-1       | 소로<br>2-500  | 일반<br>도로 |            | 군산고210<br>(`96.6.1)   | 지구외  |
| 기정 | 소로  | 1  | 194  | 10<br>~12 | 국지도로 | 231<br>(20) | 대로 2-6       | 중로<br>2-23   | 일반<br>도로 |            | 군산고210<br>(`96.6.1)   | 보도포함 |
| 기정 | 소로  | 2  | 1040 | 8         | 국지도로 | 252         | 소로1-460      | 소로<br>1-460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1 | 8         | 국지도로 | 124         | 중로2-23       | 중로<br>1-115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2 | 8         | 국지도로 | 143         | 소로<br>2-1044 | 소로<br>2-1044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3 | 8         | 국지도로 | 143         | 소로<br>2-1044 | 소로<br>2-1044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 )분은 지구내 연장임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br>(m) | 기 점          | 종 점          | 사용<br>형태 | 주 요<br>경과지 | 최 초<br>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br>(m)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1044 | 8         | 국지도로 | 359       | 소로<br>1-194  | 소로<br>1-194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5 | 8         | 국지도로 | 188       | 소로<br>2-2047 | 소로<br>2-2048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6 | 8         | 국지도로 | 116       | 소로<br>2-1045 | 소로<br>2-1048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7 | 8         | 국지도로 | 228       | 중로1-115      | 소로1-4<br>62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8 | 8         | 국지도로 | 87        | 중로2-161      | 소로<br>2-1047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49 | 8         | 국지도로 | 108       | 소로<br>2-1048 | 소로1-4<br>62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0 | 8         | 국지도로 | 93        | 소로<br>2-1048 | 소로<br>1-462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1 | 8         | 국지도로 | 88        | 중로 1-60      | 소로<br>2-500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2 | 8         | 국지도로 | 72        | 중로3-91       | 소로<br>2-1051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3 | 8         | 국지도로 | 172       | 중로3-85       | 소로<br>2-1056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4 | 8         | 국지도로 | 171       | 중로3-85       | 소로<br>2-1056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5 | 8         | 국지도로 | 171       | 중로 3-85      | 소로<br>2-1056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6 | 8         | 국지도로 | 155       | 중로<br>2-30   | 중로<br>2-170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7 | 8         | 국지도로 | 166       | 중로 3-88      | 소로<br>2-1060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8 | 8         | 국지도로 | 166       | 중로3-88       | 소로<br>2-1060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59 | 8         | 국지도로 | 167       | 중로 3-88      | 소로<br>2-1060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0 | 8         | 국지도로 | 161       | 중로<br>2-171  | 중로<br>2-172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1 | 8         | 국지도로 | 133       | 소로<br>2-1064 | 중로<br>3-89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2 | 8         | 국지도로 | 134       | 소로<br>2-1064 | 중로<br>3-89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3 | 8         | 국지도로 | 134       | 소로<br>2-1064 | 중로<br>3-89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4 | 8         | 국지도로 | 154       | 중로<br>2-173  | 중로<br>2-174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5 | 8         | 국지도로 | 135       | 소로<br>2-1068 | 중로3-9<br>0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br>(m)  | 기 점                  | 종 점                   | 사용<br>형태  | 주 요<br>경과지 | 최 초<br>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br>(m)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1066     | 8         | 특수도로 | 26         | 소로<br>2-1068         | 어린이공<br>원95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7     | 8         | 국지도로 | 135        | 소로<br>2-1068         | 중로3-9<br>0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8     | 8         | 국지도로 | 162        | 중로2-175              | 중로2-1<br>76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69     | 8         | 국지도로 | 77         | 소로<br>2-1051         | 소로1-4<br>64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70     | 8         | 국지도로 | 39         | 소로<br>2-1069         | 소로<br>2-500           | 일반<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71     | 8         | 특수도로 | 25         | 대로<br>1-21           | 중로2-1<br>63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72     | 8         | 특수도로 | 58         | 중로2-1<br>63          | 중로2-1<br>67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1073     | 8         | 특수도로 | 35         | 중로 2-6               | 중로2-1<br>63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2  | 500      | 8         | 국지도로 | 142<br>(0) | 미장동<br>56-4답         | 미장동<br>54-3대          | 일반<br>도로  |            | 군산고210<br>(`96.6.1)   | 지구외           |
| 기정 | 소로  | 3  | 246      | 6         | 국지도로 | 46<br>(0)  | 조촌동76<br>5-1<br>대1-3 | 조촌동76<br>5-2<br>소4-88 | 일반<br>도로  |            | 전북고135<br>(`78.5.22)  | 지구외<br>(가각변경) |
| 기정 | 소로  | 3  | 4-8<br>8 | 4         | 국지도로 | 338<br>(0) | 조촌동<br>소3-246        | 조촌동<br>소2-254         | 일반<br>도로  |            | 건고66호<br>(`74.6.12)   | 지구외           |
| 기정 | 소로  | 3  | 804      | 5         | 특수도로 | 11         | 중로1-1<br>15          | 소로<br>2-1040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05      | 5         | 특수도로 | 11         | 중로1-1<br>15          | 소로<br>2-1045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06      | 5         | 특수도로 | 13         | 소로<br>2-1041         | 소로<br>2-1040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07      | 5         | 특수도로 | 28         | 소로<br>1-194          | 소로<br>2-1042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08      | 5         | 특수도로 | 28         | 소로<br>2-1042         | 소로<br>2-1043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09      | 5         | 특수도로 | 28         | 소로<br>2-1043         | 소로<br>2-1044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0      | 5         | 특수도로 | 17         | 소로<br>2-1044         | 중로1-1<br>15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1      | 3         | 특수도로 | 19         | 대로 2-6               | 소로1-1<br>96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2      | 5         | 특수도로 | 10         | 소로1-4<br>61          | 소로<br>2-1044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3      | 5         | 특수도로 | 28         | 대로 2-6               | 소로1-4<br>62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4      | 5         | 특수도로 | 17         | 소로1-4<br>62          | 대로<br>1-21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815 | 5      | 특수도로 | 28     | 소로1-4<br>62  | 대로<br>1-21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6 | 5      | 특수도로 | 28     | 중로3-8<br>5   | 대로 2-6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7 | 5      | 특수도로 | 17     | 중로3-8<br>6   | 대로<br>1-20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8 | 5      | 특수도로 | 19     | 대로<br>1-20   | 중로3-8<br>7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19 | 5      | 특수도로 | 25     | 중로3-8<br>8   | 대로 2-6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0 | 5      | 특수도로 | 32     | 중로<br>2-30   | 소2-105<br>3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1 | 5      | 특수도로 | 33     | 소로<br>2-1053 | 소로<br>2-1054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 )분은 지구내 연장임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822 | 5      | 특수도로 | 33     | 소로<br>2-1055 | 중로2-17<br>0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3 | 5      | 특수도로 | 40     | 중로2-17<br>0  | 중로3-86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4 | 5      | 특수도로 | 30     | 중로<br>3-86   | 대로<br>1-20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5 | 5      | 특수도로 | 30     | 대로<br>1-20   | 중로3-87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6 | 5      | 특수도로 | 40     | 중로3-87       | 중로2-17<br>1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7 | 5      | 특수도로 | 34     | 중로2-17<br>1  | 소로<br>2-1057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28 | 5      | 특수도로 | 34     | 소로<br>2-1057 | 소로<br>2-1058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0 | 5      | 특수도로 | 34     | 소로<br>2-1059 | 중로2-17<br>2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1 | 5      | 특수도로 | 25     | 중로2-17<br>9  | 소로<br>2-1056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2 | 5      | 특수도로 | 17     | 중로3-86       | 대로<br>1-20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3 | 5      | 특수도로 | 19     | 대로<br>1-20   | 중로3-87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4 | 5      | 특수도로 | 25     | 중로2-18<br>0  | 소로<br>2-1060 | 보행자<br>도로 |         | 군산고329<br>(`11.10.28) |    |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835 | 5      | 특수도로 | 25     | 소로 2-1064 | 중로2-179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6 | 5      | 특수도로 | 19     | 중로3-89    | 대로 1-20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7 | 5      | 특수도로 | 19     | 대로 1-20   | 중로3-90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8 | 5      | 특수도로 | 25     | 소로 2-1068 | 중로2-180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39 | 5      | 특수도로 | 33     | 중로2-173   | 소로 2-1061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40 | 5      | 특수도로 | 32     | 소로 2-1061 | 소로 2-1062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41 | 5      | 특수도로 | 32     | 소로 2-1062 | 소로 2-1063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42 | 5      | 특수도로 | 32     | 소로 2-1063 | 중로2-174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43 | 5      | 특수도로 | 40     | 중로2-174   | 중로3-89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44 | 5      | 특수도로 | 30     | 중로3-89    | 대로 1-20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45 | 5      | 특수도로 | 30     | 대로 1-20   | 중3-90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46 | 5      | 특수도로 | 40     | 중로3-90    | 중로2-175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47 | 5      | 특수도로 | 34     | 중로2-175   | 소로 2-1065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49 | 2.5    | 특수도로 | 34     | 소2-1067   | 중로2-176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50 | 5      | 특수도로 | 19     | 중로3-89    | 대로 1-20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51 | 5      | 특수도로 | 19     | 대로 1-20   | 중로3-90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52 | 5      | 특수도로 | 12     | 근린공원 44   | 소로1-465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 기정 | 소로  | 3  | 853 | 5      | 특수도로 | 25     | 중2-180    | 소로1-466   | 보행자도로 |         | 군산고329 (‘11.10.28) |    |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9,398.6<br>(12,661.6) | -  | 9,398.6<br>(12,661.6) |                        |    |
| 기정 | 104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4-67답 일원 | 446.4                 | -  | 446.4                 | 군산고329<br>( '11.10.28) |    |
| 기정 | 105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6-8답 일원  | 543.1                 | -  | 543.1                 | 군산고329<br>( '11.10.28) |    |
| 기정 | 106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7-5답 일원  | 915.1                 | -  | 915.1                 | 군산고329<br>( '11.10.28) |    |
| 기정 | 107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8-6답 일원  | 3,263                 | -  | 3,263                 | 군산고329<br>( '11.10.28) |    |
| 기정 | 108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9-47답 일원 | 1,053.2               | -  | 1,053.2               | 군산고329<br>( '11.10.28) |    |
| 기정 | 109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9-20답 일원 | 782.2                 | -  | 782.2                 | 군산고329<br>( '11.10.28) |    |
| 기정 | 110      | 노외주차장 | 미장동 60-16답 일원 | 783.2                 | -  | 783.2                 | 군산고329<br>( '11.10.28) |    |
| 기정 | 111      | 노외주차장 | 미장동 60-25답 일원 | 776.1                 | -  | 776.1                 | 군산고329<br>( '11.10.28) |    |
| 기정 | 112      | 노외주차장 | 미장동 61-21답 일원 | 780.1                 | -  | 780.1                 | 군산고329<br>( '11.10.28) |    |
| 기정 | 113      | 노외주차장 | 미장동 61-2답 일원  | 459.6                 | -  | 459.6                 | 군산고329<br>( '11.10.28) |    |
| 기정 | 114      | 노외주차장 | 조촌동 255답 일원   | 481.4                 | -  | 481.4                 | 군산고329<br>( '11.10.28) |    |
| 기정 | 115      | 노외주차장 | 미장동 58-2답 일원  | 2,378.2               | -  | 2,378.2               | 전북고72<br>( '16.04.29)  |    |

※ ( )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포함한 면적임

3) 철도

가) 철도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 1,342.4              | -  | 1,342.4 |                        |    |
| 기정 | 1        | 철도  | 일반철도   | 조촌동 723철 일원 | 1,342.4              | -  | 1,342.4 | 군산고329<br>( '11.10.28) |    |

나. 도시공간시설(변경없음)

1) 광장

가) 광장 결정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 1,506.9              | -  | 1,506.9 |                        |    |
| 변경 | 1        | 광장  | 경관광장   | 조촌동 765-4대 일원 | 1,506.9              | -  | 1,506.9 | 군산고329<br>( '11.10.28) |    |

2) 공공공지

가) 공공공지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표시<br>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최초<br>결정일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1,938.2              | -  | 1,938.2 |                                    |     |
| 기정 | 35         | 공공공지 | 미장동 56-23답 일원  | 85.6                 | -  | 85.6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36         | 공공공지 | 미장동 56-120답 일원 | 85.9                 | -  | 85.9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37         | 공공공지 | 미장동 62-17답 일원  | 882.9                | -  | 882.9   |                                    |     |
| 기정 | 38         | 공공공지 | 미장동 62-15답 일원  | 883.8                | -  | 883.8   |                                    |     |

3) 공원

가) 공원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br>번호 | 공원명 | 시설의<br>종류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최초<br>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 90,991.4             | -  | 90,991.4 |                                    |     |
| 소계 |            |     |           | -          | 64,219.7             | -  | 64,219.7 |                                    |     |
| 기정 | 41         | 공원  | 근린공원      | 미장동 484-2  | 10,235.5             | -  | 10,235.5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42         | 공원  | 근린공원      | 미장동 500-1  | 19,603.3             | -  | 19,603.3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43         | 공원  | 근린공원      | 미장동 542-2  | 10,340               | -  | 10,340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44         | 공원  | 근린공원      | 조촌동 3942   | 24,040.9             | -  | 24,040.9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소계 |            |     |           | -          | 11,608.7             | -  | 11,608.7 |                                    |     |
| 기정 | 93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장동 487    | 2,456.3              | -  | 2,456.3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94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장동 538-5  | 1,557.6              | -  | 1,557.6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95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장동 554-5  | 1,500.0              | -  | 1,500.0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96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장동 506    | 1,588.6              | -  | 1,588.6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97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장동 558-1  | 2,508.7              | -  | 2,508.7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98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장동 529-4  | 1,997.5              | -  | 1,997.5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소계 |            |     |           | -          | 15,163.0             | -  | 15,163.0 |                                    |     |
| 기정 | 20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495-12 | 537.4                | -  | 537.4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21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515-6  | 656.4                | -  | 656.4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22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516-5  | 1,162.9              | -  | 1,162.9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23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517    | 3,255.3              | -  | 3,255.3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24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513-2  | 929.2                | -  | 929.2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25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508    | 4,728.8              | -  | 4,728.8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26         | 공원  | 소공원       | 조촌동 3936-3 | 1,314.2              | -  | 1,314.2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 기정 | 27         | 공원  | 소공원       | 미장동 559    | 2,578.8              | -  | 2,578.8  | 군산고329<br>( <sup>^</sup> 11.10.28) |     |

4) 녹지

가) 녹지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br>번호 | 시설명 | 시설의<br>세분 | 위 치           | 면 적(㎡)                |    |                       | 최초<br>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             | 70,206.9<br>(4,739.9) | -  | 70,206.9<br>(4,739.9) |                       |     |
| 기정 | 1          | 녹지  | 완충녹지      | 미장동 59-39답 일원 | 2,145.4<br>(2,145.4)  | -  | 2,145.4<br>(2,145.4)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2          | 녹지  | 완충녹지      | 미장동 64-6대 일원  | 2,594.5<br>(2,145.4)  | -  | 2,594.5<br>(2,145.4)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3          | 녹지  | 완충녹지      | 조촌동 244-1전 일원 | 65,467<br>(0)         | -  | 65,467<br>(0)         | (`86.5.23)            | 지구의 |

※ ( )는 지구내 면적임

다. 공공문화시설

1) 학교(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br>번호 | 시설명 | 시설의<br>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br>결정일 | 비 고 |
|----|------------|-----|-----------|----------------|--------|-----------|-----|
|    |            | -   | -         | -              | 21,138 |           |     |
| 기정 | 31         | 학교  | 초등학교      | 미장동 56-108답 일원 | 21,138 | 96.6.1    | 미장초 |

2) 공공청사(변경)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br>번호 | 시설명  | 시설의<br>세분    | 위 치           | 면 적(㎡)  |          |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             | 13,047  | 감) 919.6 | 12,127.4 |                       |    |
| 폐지 | 1          | 공공청사 | 주민센터         | 미장동 56-83답 일원 | 919.6   | 감) 919.6 | -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2          | 공공청사 | 세무서          | 미장동 61-4답 일원  | 7,029.4 | -        | 7,029.4  | 군산고329<br>(`11.10.28) |    |
| 기정 | 3          | 공공청사 | 농림축산<br>검역본부 | 미장동 62-16 일원  | 5,098   | -        | 5,098    |                       |    |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br>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공공청사1      | 공공청사 | · 공공청사 폐지<br>- 면적 : 919.6 → 0㎡ (감 919.6㎡) | · 군산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한<br>사회복지시설 결정으로 변경하여 폐지 |

3) 사회복지시설(신설)

가)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br>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최초<br>결정일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 계          |        |         | -      | 919.6 | 919.6 |           |     |
| 신설 | 4          | 사회복지시설 | 미장동 504 | -      | 919.6 | 919.6 | 금회        |     |

나) 사회복지시설 결정사유서

| 도면표시<br>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4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신설 면적 : 919.6㎡ | · 군산시 생활 SOC복합화 사업 대상 선정에 따른 가족센터 건립 |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br>번호 | 시설명 | 시설의<br>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 계          | -   | -         |               | 9,406 |                       |                |
| 기정 | 1          | 유수지 | 저류지       | 미장동 52-15종 일원 | 4,782 | 군산고329<br>(`11.10.28) | 근린공원1과<br>중복결정 |
| 기정 | 2          | 유수지 | 저류지       | 미장동 59-36답 일원 | 4,624 | 군산고329<br>(`11.10.28) | 근린공원3와<br>중복결정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 도면<br>표시<br>번호 | 가구<br>번호 | 면적(㎡)     |    |           | 획지  |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위 치 | 면적(㎡)     |  |
| 계              | -        | 131,912.8 | -  | 131,912.8 | -   | 131,912.8 |  |
| R              | 1        | 2,263.0   | -  | 2,263.0   |     |           | 최소획지구모<br>(200㎡) 이상을<br>만족시 획지분할<br>허용, 연접한<br>2개의 획지 합병<br>허용 |
|                | 2        | 3,648.7   | -  | 3,648.7   |     |           |  |
|                | 3        | 1,883.5   | -  | 1,883.5   |     |           |  |
|                | 4        | 1,083.9   | -  | 1,083.9   |     |           |  |
|                | 5        | 1,114.4   | -  | 1,114.4   |     |           |  |
|                | 6        | 2,129.9   | -  | 2,129.9   |     |           |  |
|                | 7        | 3,211.0   | -  | 3,211.0   |     |           |  |
|                | 8        | 3,206.7   | -  | 3,206.7   |     |           |  |
|                | 9        | 1,727.2   | -  | 1,727.2   |     |           |  |
|                | 10       | 2,165.1   | -  | 2,165.1   |     |           |  |
|                | 11       | 2,381.8   | -  | 2,381.8   |     |           |  |
|                | 12       | 3,115.1   | -  | 3,115.1   |     |           |  |
|                | 13       | 3,136.9   | -  | 3,136.9   |     |           |  |
|                | 14       | 2,398.9   | -  | 2,398.9   |     |           |  |
|                | 15       | 1,931.8   | -  | 1,931.8   |     |           |  |
|                | 16       | 1,930.2   | -  | 1,930.2   |     |           |  |
|                | 17       | 1,921.3   | -  | 1,921.3   |     |           |  |
|                | 18       | 1,273.9   | -  | 1,273.9   |     |           |  |
|                | 19       | 1,911.2   | -  | 1,911.2   |     |           |  |
|                | 20       | 1,916.6   | -  | 1,916.6   |     |           |  |

| 도면<br>표시<br>번호 | 가구<br>번호 | 면 적(m <sup>2</sup> )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R              | 21       | 1,917.8              | -   | 1,917.8 |     |                      | 최소획지규모<br>(200m <sup>2</sup> ) 이상을<br>만족시 획지분할<br>허용, 연결한 2개의<br>획지 합병 허용 |
|                | 22       | 1,518.1              | -   | 1,518.1 |     |                      |   |
|                | 23       | 1,614.6              | -   | 1,614.6 |     |                      |   |
|                | 24       | 2,676.9              | -   | 2,676.9 |     |                      |   |
|                | 25       | 2,668.8              | -   | 2,668.8 |     |                      |   |
|                | 26       | 2,668.6              | -   | 2,668.6 |     |                      |   |
|                | 27       | 2,669.2              | -   | 2,669.2 |     |                      |   |
|                | 28       | 2,738.0              | -   | 2,738.0 |     |                      |   |
|                | 29       | 2,734.7              | -   | 2,734.7 |     |                      |   |
|                | 30       | 1,315.0              | -   | 1,315.0 |     |                      |   |
|                | 31       | 2,683.9              | -   | 2,683.9 |     |                      |   |
|                | 32       | 1,829.1              | -   | 1,829.1 |     |                      |   |
|                | 33       | 1,840.0              | -   | 1,840.0 |     |                      |   |
|                | 34       | 1,834.6              | -   | 1,834.6 |     |                      |   |
|                | 35       | 1,824.8              | -   | 1,824.8 |     |                      |   |
|                | 36       | 1,979.6              | -   | 1,979.6 |     |                      |   |
|                | 37       | 1,982.8              | -   | 1,982.8 |     |                      |   |
|                | 38       | 1,996.8              | -   | 1,996.8 |     |                      |   |
|                | 39       | 2,007.5              | -   | 2,007.5 |     |                      |   |
|                | 40       | 2,135.9              | -   | 2,135.9 |     |                      |   |
|                | 41       | 2,137.0              | -   | 2,137.0 |     |                      |   |
|                | 42       | 2,127.4              | -   | 2,127.4 |     |                      |   |
|                | 43       | 2,115.6              | -   | 2,115.6 |     |                      |   |
|                | 44       | 2,797.3              | -   | 2,797.3 |     |                      |   |
|                | 45       | 2,792.2              | -   | 2,792.2 |     |                      |   |
|                | 46       | 1,547.3              | -   | 1,547.3 |     |                      |   |
|                | 47       | 2,907.4              | -   | 2,907.4 |     |                      |   |
|                | 48       | 2,671.5              | -   | 2,671.5 |     |                      |   |
|                | 49       | 2,666.6              | -   | 2,666.6 |     |                      |   |
|                | 50       | 2,071.6              | -   | 2,071.6 |     |                      |   |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m <sup>2</sup> )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R        | 51    | 2,685.6              | -   | 2,685.6 |     |                      | 최소획지구모 (200m <sup>2</sup> )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
|          | 52    | 1,914.6              | -   | 1,914.6 |     |                      |   |
|          | 53    | 1,929.4              | -   | 1,929.4 |     |                      |   |
|          | 54    | 1,925.7              | -   | 1,925.7 |     |                      |   |
|          | 55    | 1,920.6              | -   | 1,920.6 |     |                      |   |
|          | 56    | 2,238.0              | -   | 2,238.0 |     |                      |   |
|          | 57    | 893.6                | -   | 893.6   |     |                      |   |
|          | 58    | 876.6                | -   | 876.6   |     |                      |   |
|          | 59    | 2,240.5              | -   | 2,240.5 |     |                      |   |
|          | 60    | 2260                 | -   | 2260    |     |                      |   |
|          | 63    | 2,206.5              | -   | 2,206.5 |     |                      |   |

※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나. 공동주택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m <sup>2</sup> )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계        | -     | 146,297.7            | -   | 146,297.7 | -   | 146,297.7            |                                 |
| A        | 1     | 24,372.2             | -   | 24,372.2  |     |                      | 획지의 분할 불가 (단,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은 제외) |
|          | 2     | 47,309.0             | -   | 47,309.0  |     |                      |                                 |
|          | 3     | 39,058.5             | -   | 39,058.5  |     |                      |                                 |
|          | 4     | 35,558.0             | -   | 35,558.0  |     |                      |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m <sup>2</sup> )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계        | -     | 92,114.6             | -   | 92,114.6 | -   | 92,114.6             |  |
| NC       | 1     | 1,510.2              | -   | 1,510.2  |     |                      | 최소획지구모(330m <sup>2</sup> )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
|          | 2     | 1,652.3              | -   | 1,652.3  |     |                      |  |
|          | 3     | 2,585.6              | -   | 2,585.6  |     |                      |  |
|          | 4     | 3,611.0              | -   | 3,611.0  |     |                      |  |
|          | 5     | 2,691.2              | -   | 2,691.2  |     |                      |  |

| 도면<br>표시<br>번호 | 가구<br>번호 | 면 적(m <sup>2</sup> ) |     |          | 획 지 |                      | 비고   |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 계              | -        | 92,114.6             | -   | 92,114.6 | -   | 92,114.6             |  |     |
| NC             | 6        | 1,923.4              | -   | 1,923.4  |     |                      | 최소획지구모(330m <sup>2</sup> )<br>이상을 만족시 획지분<br>할 허용,<br>연접한 2개의 획지 합<br>병 허용 |     |
|                | 7        | 2,245.8              | -   | 2,245.8  |     |                      |  |     |
|                | 8        | 1,912.8              | -   | 1,912.8  |     |                      |  |     |
|                | 9        | 2,417.0              | -   | 2,417.0  |     |                      |  |     |
|                | 10       | 1,905.1              | -   | 1,905.1  |     |                      |  |     |
|                | 11       | 1,883.2              | -   | 1,883.2  |     |                      |  |     |
|                | 12       | 1,922.7              | -   | 1,922.7  |     |                      |  |     |
|                | 13       | 1,922.8              | -   | 1,922.8  |     |                      |  |     |
|                | 14       | 1,915.5              | -   | 1,915.5  |     |                      |  |     |
|                | 15       | 1,798.9              | -   | 1,798.9  |     |                      |  |     |
|                | 16       | 3,274.7              | -   | 3,274.7  |     |                      |  |     |
|                | 17       | 2,538.4              | -   | 2,538.4  |     |                      |  |     |
|                | 18       | 2,618.0              | -   | 2,618.0  |     |                      |  |     |
|                | 19       | 3,293.3              | -   | 3,293.3  |     |                      |  |     |
|                | 20       | 2,394.8              | -   | 2,394.8  |     |                      |  |     |
|                | 21       | 2,511.7              | -   | 2,511.7  |     |                      |  |     |
|                | 22       | 2,424.6              | -   | 2,424.6  |     |                      |  |     |
|                | 23       | 2,283.9              | -   | 2,283.9  |     |                      |  |     |
|                | 24       | 1,765.2              | -   | 1,765.2  |     |                      |  |     |
|                | 25       | 1,763.9              | -   | 1,763.9  |     |                      |  |     |
|                | 26       | 1,763.2              | -   | 1,763.2  |     |                      |  |     |
|                | 27       | 1,762.8              | -   | 1,762.8  |     |                      |  |     |
|                | 28       | 1,651.8              | -   | 1,651.8  |     |                      |  |     |
|                | 29       | 1,958.7              | -   | 1,958.7  |     |                      |  |     |
|                | 30       | 2,005.0              | -   | 2,005.0  |     |                      |  |     |
|                | 31       | 1,705.6              | -   | 1,705.6  |     |                      |  |     |
|                | 32       | 2,610.7              | -   | 2,610.7  |     |                      |  |     |
|                | 33       | 2,095.6              | -   | 2,095.6  |     |                      |  |     |
|                | 34       | 2,030.4              | -   | 2,030.4  |     |                      |  |     |
|                | 35       | 2,584.4              | -   | 2,584.4  |     |                      |  |     |
|                | 36       | 4,092.9              | -   | 4,092.9  |     |                      |  |     |
|                | 37       | 1,250.0              | -   | 1,250.0  |     |                      |  |     |
|                | 38       | 1,829.1              | -   | 1,829.1  |     |                      |  |     |
|                | 39       | 2,219.0              | -   | 2,219.0  |     |                      |  |     |
|                | 40       | 836.0                | -   | 836.0    |     |                      |  |     |
|                | 41       | 1,659.8              | -   | 1,659.8  |     |                      |  |     |
|                | 42       | 2,293.6              | -   | 2,293.6  |     |                      |  |     |
|                | 43       | 1,000.0              | -   | 1,000.0  |     |                      |  | 과출소 |

※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라. 준주거용지

| 도면<br>표시<br>번호 | 가구<br>번호 | 면 적(m <sup>2</sup> )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계              | -        | 11,781.8             | -   | 11,781.8 | -   | 11,781.8             |  |
| CE             | 1        | 4,059.8              | -   | 4,059.8  |     |                      | 최소획지규모<br>(400m <sup>2</sup> )이상을<br>만족시 획지분할 허용,<br>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br>허용 |
|                | 2        | 2,078.5              | -   | 2,078.5  |     |                      |  |
|                | 3        | 2,078.8              | -   | 2,078.8  |     |                      |  |
|                | 4        | 479.0                | -   | 479.0    |     |                      |  |
|                | 5        | 3,085.7              | -   | 3,085.7  |     |                      |  |

※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마. 상업용지

| 도면<br>표시<br>번호 | 가구<br>번호 | 면 적(m <sup>2</sup> )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계              | -        | 54,200.4             | -   | 54,200.4 | -   | 54,200.4             |  |
| C1             | 1        | 4,355.6              | -   | 4,355.6  |     |                      | 최소획지규모<br>(간선부상업용지:500m <sup>2</sup> ,<br>이면부상업용지:400m <sup>2</sup> )<br>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br>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br>합병 허용 |
|                | 2        | 4,382.1              | -   | 4,382.1  |     |                      |  |
|                | 3        | 2,203.5              | -   | 2,203.5  |     |                      |  |
|                | 4        | 3,759.4              | -   | 3,759.4  |     |                      |  |
|                | 5        | 3,750.9              | -   | 3,750.9  |     |                      |  |
|                | 6        | 4,826.4              | -   | 4,826.4  |     |                      |  |
| C2             | 1        | 5,058.8              | -   | 5,058.8  |     |                      |  |
|                | 2        | 3,648.6              | -   | 3,648.6  |     |                      |  |
|                | 3        | 5,665.7              | -   | 5,665.7  |     |                      |  |
| C3             | 1        | 2,465.5              | -   | 2,465.5  |     |                      |  |
|                | 2        | 2,046.5              | -   | 2,046.5  |     |                      |  |
|                | 3        | 2,042.2              | -   | 2,042.2  |     |                      |  |
|                | 4        | 3,204.3              | -   | 3,204.3  |     |                      |  |
|                | 5        | 2,073.4              | -   | 2,073.4  |     |                      |  |
|                | 6        | 4,717.5              | -   | 4,717.5  |     |                      |  |

※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바. 주차장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m <sup>2</sup> )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계        | -     | 9,398.6<br>(12,661.6) | -   | 9,398.6<br>(12,661.6) | -   | 9,398.6<br>(12,661.6) |           |
| 주        | 1     | 446.4                 | -   | 446.4                 |     |                       | 획지의 분할 불가 |
|          | 2     | 543.1                 | -   | 543.1                 |     |                       |           |
|          | 3     | 915.1                 | -   | 915.1                 |     |                       |           |
|          | 4     | (3,263)               | -   | (3,263)               |     |                       |           |
|          | 5     | 1,053.2               | -   | 1,053.2               |     |                       |           |
|          | 6     | 782.2                 | -   | 782.2                 |     |                       |           |
|          | 7     | 783.2                 | -   | 783.2                 |     |                       |           |
|          | 8     | 776.1                 | -   | 776.1                 |     |                       |           |
|          | 9     | 780.1                 | -   | 780.1                 |     |                       |           |
|          | 10    | 459.6                 | -   | 459.6                 |     |                       |           |
|          | 11    | 481.4                 | -   | 481.4                 |     |                       |           |
|          | 12    | 2,378.2               | -   | 2,378.2               |     |                       |           |

※ ( )는 소공원4와 중복결정한 지하주차장 ‘주4’의 포함면적임

사. 교육시설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m <sup>2</sup> ) | 획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적(m <sup>2</sup> ) |           |
| 계        | -     | 21,138               | -              | 21,138              |           |
| 초        | 1     | 21,138               | 미장동 56-108답 일원 | 21,138              | 획지의 분할 불가 |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m <sup>2</sup> )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계        | -     | 760.2                | -   | 760.2 | -   | 760.2                |           |
| 주유       | 1     | 760.2                | -   | 760.2 |     | 760.2                | 획지의 분할 불가 |

자. 종교시설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m <sup>2</sup> ) |     |         | 획 지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위 치 | 면 적(m <sup>2</sup> ) |           |
| 계        | -     | 6,092.7              | -   | 6,092.7 |     | 6,092.7              |           |
| 중        | 1     | 2969.3               | -   | 2969.3  |     |                      | 획지의 분할 불가 |
|          | 2     | 1320.7               | -   | 1320.7  |     |                      |           |
|          | 3     | 1802.7               | -   | 1802.7  |     |                      |           |

차. 공급처리시설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m <sup>2</sup> ) | 획지            |                     | 비고        |
|----------|-------|----------------------|---------------|---------------------|-----------|
|          |       |                      | 위 치           | 면적(m <sup>2</sup> ) |           |
| 계        | -     | 9,406                | -             | 9,406               |           |
| 저        | 1     | 4,782                | 미장동 52-15종 일원 | 4,782               | 획지의 분할 불가 |
|          | 2     | 4,624                | 미장동 59-36답 일원 | 4,624               |           |

3.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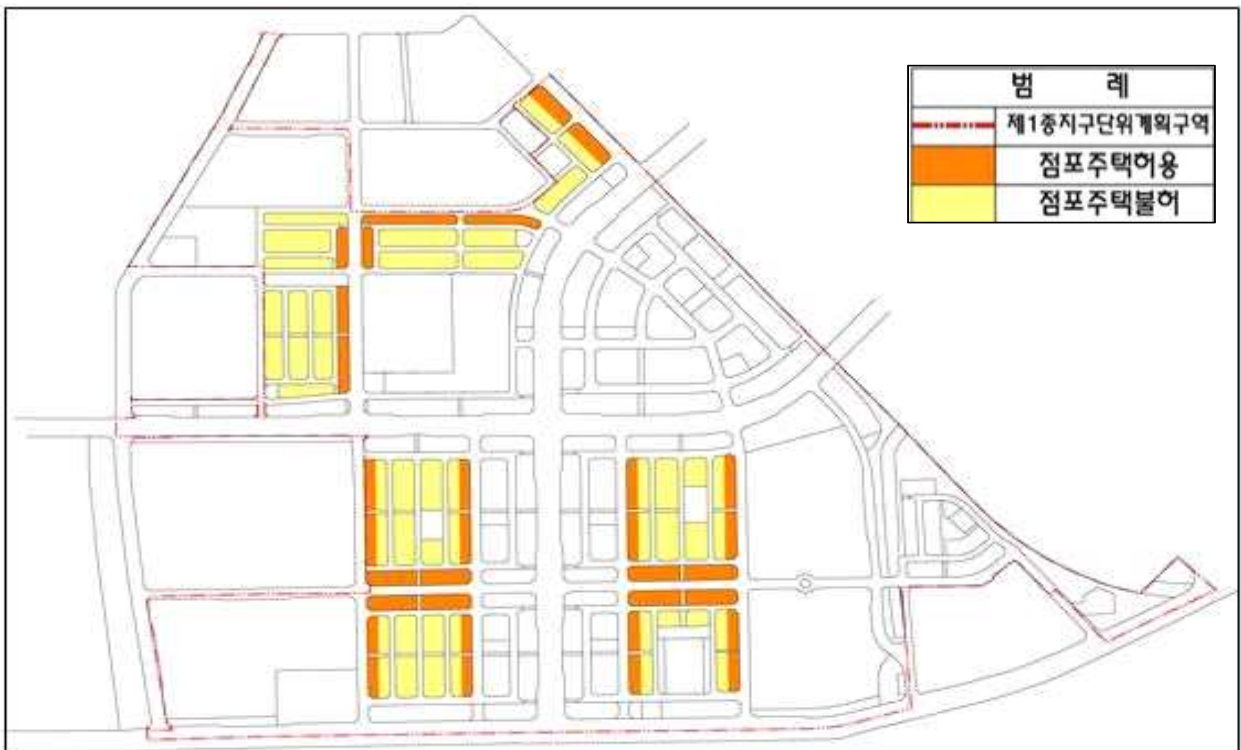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R        | 1 ~ 63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li> <li>• 점포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li> <li>※ 점포주택은 15m 이상의 도로에 장변이 면한 블록에 한하여 허용한다. (&lt;그림1&gt; 단독주택용지 용도별 구분도 참조)</li> <li>※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1층 또는 지하1층에 한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50% 이하여야 한다.</li> </ul> |
|          |            | 불허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지하층 주거용도</li> <li>•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lt;별표1&gt; 참조)</li> </ul>  |

| 도면<br>표시<br>번호 | 위 치<br>(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R              | 1 ~ 63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 이하</li> </ul>   |
|                |               | 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 이하</li> </ul>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층수 : 3층 이하(1층 전체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4층까지 허용)</li> </ul>  |
|                |               | 허용<br>가구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가구 이하</li> </ul>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li> </ul>  |
|                |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전면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배치 시 경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일자형 배치는 지양토록 권장한다.</li> <li>-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남향, 동향, 동남향 배치를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축물을 설치토록 한다.</li> <li>- 건축물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 방향과 일치토록 권장하며, 각각에 접한 대지는 접한 모든 도로의 벽면방향과 일치토록 한다.</li> <li>-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변 1m를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다.</li> </ul> </li> <li>• 건물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 차이가 심한 개구부의 설치, 서로 조화되지 않는 형태의 개구부 배열, 난잡한 형태요소의 남용,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한다.</li> <li>- 점포주택 1층에는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cm 이내로 한다.</li> <li>- 점포주택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1/2 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li> <li>- 1층에 필로티구조로 주차장 활용시에는 수직이동공간 및 관리공간을 제외한 1층 전체를 필로티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li> <li>-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li> </ul> </li> </ul> |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R        | 1 ~ 63    | 형태 및 외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및 옥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li> <li>-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li> </ul> </li> <li>•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문의 높이는 1.8m 이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li> <li>-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li> <li>- 점포주택은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li> </ul> </li> <li>•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li> <li>-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ul> |

< 그림 1 > 단독주택용지 용도별 구분도



나. 공동주택용지(아파트)(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A        | 1 ~ 4      | 용도       | 허용 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          | 불허 용도  | • 허용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          |            | 용적률      |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          |            | 높이       |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          |            | 규모 및 세대수 | •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li> <li>•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한다.</li> <li>•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모퉁이변 건축한계선 공간은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li> </ul>   |                 |
|          |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저감대책에서 제시하는 직각배치구간 및 층고제한 사항을 준수한다.</li> <li>• 저층(12층 이하) 배치구간,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 그리고 지정된 층수는 결정도를 따른다.</li> <li>•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 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 단지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설치 시 유치원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li> </ul> </li> <li>• 주거동 1동의 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층이하 부분 : 80m 이하</li> <li>- 16층 ~ 20층 부분 : 60m 이하</li> <li>- 21층이상 부분 : 40m 이하</li> </ul> </li> <li>• 동일주거동내 층수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층 이하의 주거동 중 같은 층수의 연속된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동일주거동내에서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는 낮은 층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며, 10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li> <li>- 층수변화로 인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벽면은 입면디자인을 통하여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li> </ul> </li> </ul> |                 |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                    |              |        |     |                    |              |       |            |              |              |
|----------|-------------|--------------------|---|-----|------|------|------|--------|-------------|--------------------|--------------|--------|-----|--------------------|--------------|-------|------------|--------------|--------------|
| A        | 1 ~ 4       | 형태 및 외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면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동은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li> <li>- 주거동 입면변화의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91 745 1377 963"> <thead> <tr> <th>구 분</th> <th>최상층부</th> <th>기준층부</th> <th>지상층부</th> </tr> </thead> <tbody> <tr> <td>16층 이상</td> <td>최상층에서부터 2개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r> <td>15층-9층</td> <td>최상층</td> <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 </tr> <tr> <td>8층 이하</td> <td>최상층부 구분 없음</td> <td>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 <td>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td> </tr> </tbody> </table> </li> </ul> </li> <li>• 피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피로티 구조’를 설치한다.</li> <li>- 피로티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5.5m 또는 2개 층 이상이며, ‘폭 10m 또는 주거동 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li> <li>- 4호 이내의 주거동에 피로티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최소 4m 이상이어야 한다.</li> </ul> </li> <li>• 지붕형태, 옥탑 등 친공부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li> <li>- 지붕형태를 박공, 방형(우진각), 원형 등으로 다양화 하고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건물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li> <li>- 슬라브형 평지붕 설치시 지붕 전체 면적의 5/10 이내에 한하여 허용한다.</li> <li>-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li> </ul> </li>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담장의 재료와 형태를 통일시키도록 한다.</li> </ul> </li> <li>•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ul> | 구 분 | 최상층부 | 기준층부 | 지상층부 | 16층 이상 |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 15층-9층 | 최상층 |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 8층 이하 | 최상층부 구분 없음 |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
| 구 분      | 최상층부        | 기준층부               | 지상층부  |     |      |      |      |        |             |                    |              |        |     |                    |              |       |            |              |              |
| 16층 이상   |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     |      |      |      |        |             |                    |              |        |     |                    |              |       |            |              |              |
| 15층-9층   | 최상층         |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     |      |      |      |        |             |                    |              |        |     |                    |              |       |            |              |              |
| 8층 이하    | 최상층부 구분 없음  |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     |      |      |      |        |             |                    |              |        |     |                    |              |       |            |              |              |

다.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  |
|----------|------------|------------------|--|--|
|          |            |                  | 계 획 내 용  |  |
| NC       | 1 ~ 42     | 용도               | 허용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장 제외)</li> <li>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것(통신용철탑 설치 불허)</li> <li>주거용도 1개층에 한해 허용</li> </ul> |
|          |            |                  | 불허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lt;별표1&gt; 참조)</li> </ul>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 이하</li> </ul>   |  |
|          |            | 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 이하</li> </ul>  |  |
|          |            | 높이 <sup>1)</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층수 : 5층 이하</li> <li>최저층수 : 2층 이상</li> </ul>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li> <li>건축선 지정에 의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고객을 위한 서비스 시설(조경, 파고라, 휴게의자, 지하설비구조물 등)을 제외한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li> </ul>   |  |
|          |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전면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둘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한다. 다만,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각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li> </ul> </li> <li>건축물 1층 바닥높이 및 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상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li> <li>준주거용지의 도로변 건축물 1층 층고는 4~4.5m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li> </ul> </li> </ul> |  |

주1)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건축높이지정규간』에 해당하는 필지는 최저 및 최고층수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높이(16m~19m)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만 한다.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근린 생활 시설 용 지   |                       |
|----------|-------------------------|-----|--|-----------------------|
|          |                         |     | 계 획 내 용  |                       |
| NC       | 1 ~ 42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1/2 이상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li> <li>-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반사성 금속, 반사성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한다.</li> <li>-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li> <li>-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 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li> <li>-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li> </ul> </li> </ul>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li> </ul> </li> <li>• 건축물의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ul>   |                       |
| 43       |                         | 용도  | 허용용도   | • 경찰 파출소 · 지구대 및 부속용도 |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                         | 높이  | • 최고층수 : 5층 이하   |                       |
| 건축선      |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  |                       |

라.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도면<br>표시<br>번호 | 위 치<br>(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 준주거용지   |   |
| CE             | 1<br>~<br>5   | 용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71조 제1항제6호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불허용도 외의 용도</li> </ul>   |
|                |               |     | 불허<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li> <li>•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li> <li>•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해 허용)</li> <li>• 종교시설</li> <li>• 운수시설</li> <li>•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li> <li>•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li> <li>• 공장 및 창고시설</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해 허용)</li> <li>•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li> <li>•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에 한해 허용)</li> <li>• 발전시설</li> <li>• 관광휴게시설</li> </ul> <p>※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lt;별표1&gt; 참조)</p> |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용적률   | • 400% 이하   |
|                |               |     | 높이 <sup>1)</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층수 : 7층 이하</li> <li>• 최저층수 : 2층 이상</li> </ul>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li> <li>• 건축선 지정에 의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고객을 위한 서비스시설(조경, 파고라, 휴게의자, 지하설비구조물 등)을 제외한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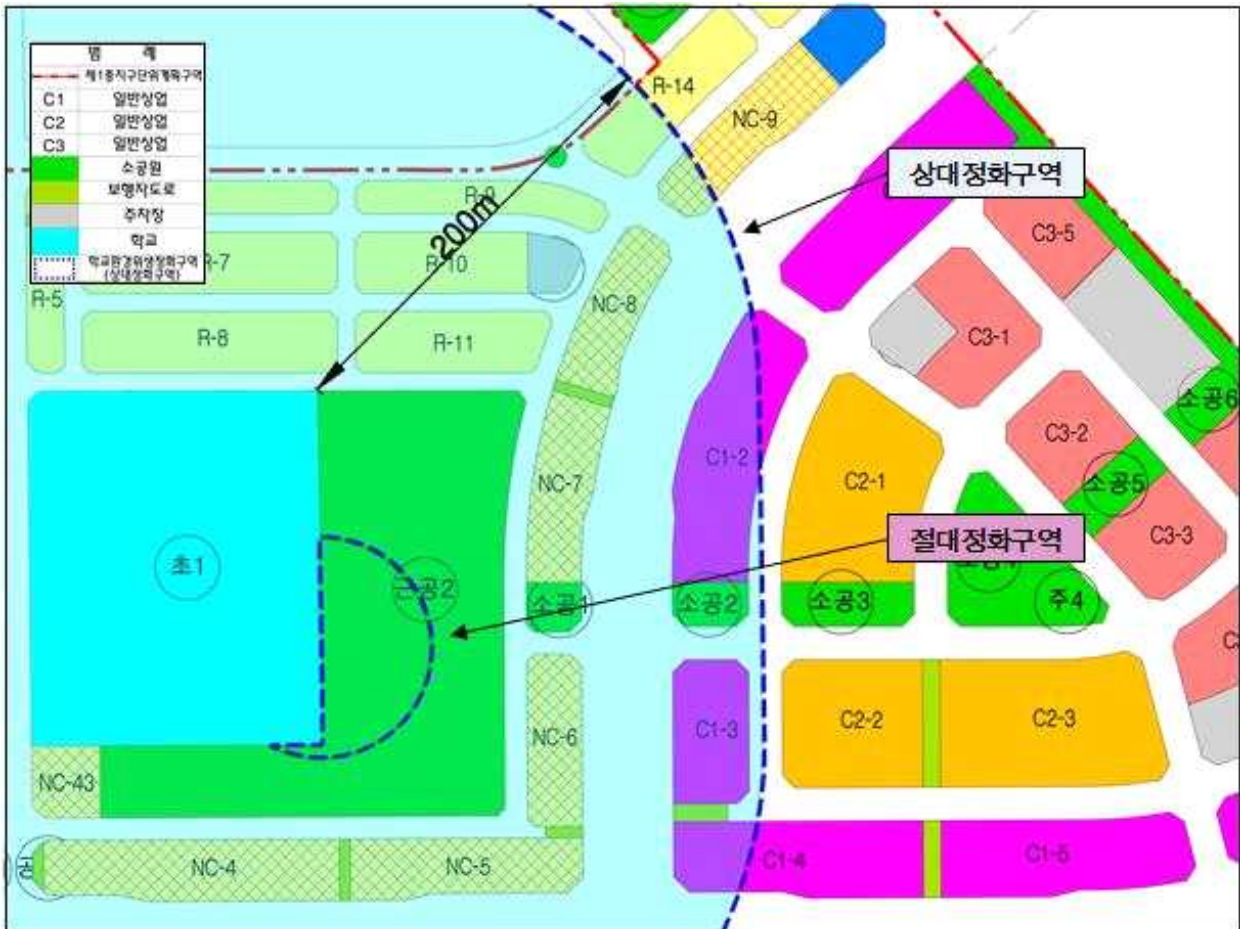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CE       | 1<br>~<br>5 |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전면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li> </ul> </li> <li>• 건축물 1층 바닥높이 및 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상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li> <li>- 준주거용지의 도로변 건축물 1층 층고는 4~4.5m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li> </ul> </li> <li>• 건축물의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1/2 이상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li> <li>-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반사성 금속, 반사성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한다.</li> <li>-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 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li> <li>-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 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li> <li>-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li> </ul> </li> </ul>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li> </ul> </li> <li>• 건축물의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ul>   |

마. 상업용지(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용도  | • <별표3> 및 <그림2>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
|          |            | 건폐율 | • 70% 이하   |
|          |            | 용적률 | • 600% 이하  |
|          |            | 높이  | • 최저층수 : 2층 이상   |
|          |            | 건축선 |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br>• 건축선 지정에 의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고객을 위한 서비스시설(조경, 파고라, 휴게의자, 지하설비구조물 등)을 제외한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  |
| C1       | 1 ~ 6,     | 배치  | • 건축물의 전면방향<br>- 둘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다만,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
| C2       | 1 ~ 3,     |     |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및 층고<br>-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상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br>- 대로급 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4.5m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
| C3       | 1 ~ 6      |     | • 건축물의 외관<br>-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3/5 이상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br>-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반사성 금속, 반사성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한다.<br>-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br>- 상업용지 건축물에서 공원 및 보행자도로에 노출되는 외벽은 외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 또는 벽면녹화로 조성하여, 공원 및 보행자도로에서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br>-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br>-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br>- 지붕·옥상층은 조경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C1       | 1 ~ 6,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li> <li>- 당해 건물로부터 인접대지까지의 측면이격거리가 2m 이하인 경우 측면이격공지의 전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시설이나 1층 높이 이상의 담장 또는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장이나 지하층 출입구는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색깔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측면이격거리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측면이격공지 전면부분에 식재 등 조경시설을 한다.</li> </ul> </li> <li>• 건축물의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ul> |
| C2       | 1 ~ 3,     |     |   |
| C3       | 1 ~ 6      |     |   |

< 그림 2 > 상업용지 용도별 구분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구분 포함)



바.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변경없음)

| 도면<br>표시<br>번호    | 위 치<br>(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br>1<br>~<br>12 |   | 용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li> <li>• ‘부속용도’는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한정하며, 타시설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허<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폐율,<br>용적률,<br>높이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3">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th> </tr> <tr> <th>도면표시</th> <th>P1</th> <th>P2</th> <th>P3</th> </tr> </thead> <tbody> <tr> <td>건폐율</td> <td>-</td> <td>80% 이하</td> <td>80% 이하</td> </tr> <tr> <td>용적률</td> <td>-</td> <td>640% 이하</td> <td>400% 이하</td> </tr> <tr> <td>최고층수</td> <td>-</td> <td>8층 이하</td> <td>5층 이하</td> </tr> <tr> <td>해당블록</td> <td>주1, 주2, 주4</td> <td>주3, 주5, 주12</td> <td>주6 ~ 주11</td> </tr> </tbody> </table> |   |    | 구분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  |  | 도면표시 | P1 | P2 | P3 | 건폐율 | - | 80% 이하 | 80% 이하 | 용적률 | - | 640% 이하 | 400% 이하 | 최고층수 | - | 8층 이하 | 5층 이하 | 해당블록 | 주1, 주2, 주4 | 주3, 주5, 주12 | 주6 ~ 주11 |
|                   |   |                    | 구분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면표시   | P1  | P2 | P3 |               |  |  |      |    |    |    |     |   |        |        |     |   |         |         |      |   |       |       |      |            |             |          |
| 건폐율               | -   |                    | 80% 이하   | 8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적률               | -   |                    | 640% 이하  | 40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고층수              | -   | 8층 이하              | 5층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블록              | 주1, 주2, 주4  | 주3, 주5, 주12        | 주6 ~ 주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li> <li>-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li> <li>- 주차장건축물 전면부의 상층부는 주차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하도록 하며, 기타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사항은 상업업무용지의 사항을 준용한다.</li> <li>-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li> <li>-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li>•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공공청사 (변경)

| 도면시<br>표번호 | 위치<br>(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공          | 2   | 용<br>도 | 허용<br>용도  | • 세무서 및 부속용도  |                   |
|            |   |        | 불허<br>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            |   | 높이     | -   |               |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li> <li>-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li> <li>-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옥상녹화를 하도록 권장한다.</li> <li>-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 V 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li> <li>-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ul> |               |                   |
|            |   | 3      | 용<br>도  | 허용<br>용도      | •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부속용도 |
|            |   |        |   | 불허<br>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        | 높이  |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li> <li>-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li> <li>-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옥상녹화를 하도록 권장한다.</li> <li>-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 V 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li> <li>-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ul> |        |   |               |                   |

3) 교육시설(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초        | 1  | 용도       | 허용용도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의한 초등학교 |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 높이       | -   |                           |
|          |  | 건축선 및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li> <li>- 근린공원변 시설은 외부공간이 공원과 일체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건축물을 배치하여야한다.</li> </ul> </li> </ul>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한다.</li> <li>-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li> <li>-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li> <li>-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ul> |          |   |                           |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사항(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주유       | 1         | 용도  | 허용용도  | • 주유소 및 부대시설  |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50% 이하  |               |
|          |           | 용적률 | • 200% 이하   |               |
|          |           | 높이  | • 최고층수 : 4층 이하  |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유소 및 부대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li> <li>•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한다.</li> <li>-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li> <li>-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유소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li> </ul> </li> </ul> |               |

5) 종교시설(변경없음)

| 도면<br>표시<br>번호 | 위치<br>(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종              | 1 ~ 3        | 용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집회장</li> <li>•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납골당 제외)</li> </ul> |
|                |              |     | 불허<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                |              | 건폐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 이하</li> </ul>   |  |
|                |              | 용적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 이하</li> </ul>  |  |
|                |              | 높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층 이하, 종탑포함시 25m 이하</li> </ul>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li> </ul>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시설은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li> <li>-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li> <li>-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li> <li>- 건축물의 높이는 지면에서 5층 이하로 조성한다.</li> <li>- 건축물의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li> <li>-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 존치 건축물인 종교시설 3(그리심교회)은 제4호 근린공원 이용자의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담장을 설치하되,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등으로 설치토록 한다.</li> </ul> </li> <li>• 지붕 및 종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li> <li>-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지붕 안에 설치하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돌출되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한다.</li> <li>- 종탑의 높이는 지면에서 25m 이하로 조성한다.</li> <li>- 종탑에 부착되는 간판 및 종교상징물은 네온, 백열등 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 조명방식으로 설치한다.</li> </ul> </li> </ul> |  |

6)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저        | 1 ~ 2      | 용도  | 허용용도   | • 저류시설        |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20% 이하   |               |
|          |            | 용적률 | • 80% 이하   |               |
|          |            | 높이  | -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한다.</li> <li>-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도록 한다.</li> <li>- 건축물의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li> <li>-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ul> |               |

7) 사회복지시설(신설)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사        | 1   | 용도  | 허용용도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준용) |
|          |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 60% 이하                  |   |
|          |   | 용적률 | • 250% 이하                 |   |
|          |   | 높이  | -                         |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li> <li>-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 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li> <li>-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옥상녹화를 하도록 권장한다.</li> <li>-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V편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li>•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li> <li>-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ul> |     |                           |   |

7.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R        | 1 ~ 63 | 대지내 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li> </ul> </li> <li>• 대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마당은 가급적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점포형주택은 건축물 측면에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ul>   |
|          |        | 교통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ul> </li> <li>•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가구당 1.42대 이상과 '군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한다.</li> <li>- 점포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거용도의 주차대수 설치기준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군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li> </ul> </li> </ul>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ul>   |

나. 공동주택용지(아파트)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A        | 1 ~ 4 | 대지내 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공지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2m 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주택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보행쉼터를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한다.</li> </ul> </li> <li>• 공개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하고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li> </ul> </li> </ul> |

| 도면<br>표시<br>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A              | 1 ~ 4 | 대지내<br>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2조의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르며, 공원 또는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한다.</li> <li>- 각각부의 공공조경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과 ‘군산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li> <li>-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차량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한다.</li> </ul> </li> <br/> <li>• 단지내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단지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보한다.</li> <li>- 단지내 녹지는 인근 공동주택을 비롯해, 주변 공원 및 녹지가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li> <li>-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 녹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 식재를 한다.</li> <li>2. 공원 및 완충녹지 주변 녹지 : 공원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하고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li> <li>3.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li> <li>4.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li> </ol> </li> <li>-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심의시 검토 받아 계획적 식재를 한다.</li> </ul> </li> <br/> <li>•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li> <li>- 가로물매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li> <li>-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될 수 있는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한다.</li> <li>-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되, 공공보행통로의 방향성 및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li> </ul> </li> </ul> |

| 도면<br>표시<br>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A              | 1 ~ 4 | 교통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li>-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 주택단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자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T’자 교차를 허용하며 서로의 가감속차로가 겹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다.</li> </ul> </li> <li>• 단지내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한다.</li> <li>-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li> <li>-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li> </ul> </li> <li>•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li> <li>-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용,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li>-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li> <li>-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li> </ul> </li> <li>• 단지내 도로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권장한다.</li> <li>-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li> </ul> </li> <li>• 단지내 보도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li> <li>- 단지내 보도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li> </ul> </li> </ul>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ul>  |

다. 근린생활시설 · 준주거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분     | 계 획 내 용   |
|----------|-----------|--------|---|
| NC       | 1 ~ 43    | 대지내 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li> <li>-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하고 ‘제1편 제1장 제12조 제②항 (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li> </ul> </li> </ul>   |
|          |           | 교통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ul> </li> <li>•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군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li> <li>-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li> <li>- 주차장에는 입주기업·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li> <li>-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li> </ul> </li> </ul> |
| CE       | 1 ~ 5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ul>  |

라. 상 업 용 지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C1       | 1 ~ 6, | 대지내 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li> </ul> </li> </ul> |
| C2       | 1 ~ 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상업용지 중 공원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공원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공연, 전시, 노천카페 등 다양한 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한다.</li> </ul>   |
| C3       | 1 ~ 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하고 ‘제1편 제1장 제12조 제②항 (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li> </ul>  |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C1       | 1 ~ 6, | 교통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ul> </li> <li>•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군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li> <li>-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연접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과 일체형 또는 연결통로를 조성하여 지하주차장을 공동이용할 것을 권장한다.</li> <li>-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li> <li>- 주차장에는 입주기업·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li> <li>-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조경을 하며 이 경우 조성면적을 조정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ul> </li> </ul> |
| C2       | 1 ~ 3, |      |   |
| C3       | 1 ~ 6  |      |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ul>  |

마.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        | 공통 | 대지내 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경계부는 주변지역과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보행쉽터를 형성하도록 권장한다.</li> <li>-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중 대형 공공시설은 야간활동 지원 및 주요 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li> <li>- 근린공원변 시설의 외부공간은 공원과 동일한 식재를 하는 등 공원과 일체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li> </ul> </li> </ul> |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 -        | 공통 | 교통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li>-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li> <li>-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한다.</li> </ul> </li> <li>• 주차장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군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 결 내용을 따라야한다. 단,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li> <li>-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한다.</li> <li>-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li> <li>-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li>- 노외주차장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준치 건축물인 종교시설3(그리십교회)은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주차대수 8대 및 환지도지를 감안한 주차대수 20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28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li> </ul> </li> </ul> |
|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li> </ul> </li> </ul>  |
| 초        | 1  | 교통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2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한다.</li> </ul> </li> <li>• 보행자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한다.</li> <li>-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근린공원과 연결되도록 권장한다.</li> </ul> </li> </ul>   |
|          |    | 대지내 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급적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li> <li>- 근린공원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공원과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li> </ul> </li> </ul>  |
| 주유       | 1  | 교통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유소는 이용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한다.</li> </ul> </li> </ul>  |

## &lt;별표1&gt;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2008.3.21>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9.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10.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 (1)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2) 만화가게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 (5) 담배자동판매기
  -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별표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

| 구분  |     |        | 대지면적<br>(㎡) | 세대수<br>(세대) | 인구수<br>(인) | 평균<br>분양면적<br>(㎡) | 평균층수<br>(층) | 최고층수<br>(층) | 건폐율<br>(%) | 용적률<br>(%) | 비고   |
|-----|-----|--------|-------------|-------------|------------|-------------------|-------------|-------------|------------|------------|------|
| 유형  | 블록명 | 주택규모   |             |             |            |                   |             |             |            |            |      |
| 합계  |     |        | 146,378     | 3,470       | 9,821      | -                 | -           | -           | -          | -          | -    |
| 아파트 | A-1 | 소계     | 24,373      | 694         | 1,964      | -                 | 20          | 25          | 50         | 250        | -    |
|     |     | 85㎡ 이하 | 16,373      | 512         | 1,449      | 80                | 20          | 25          | 50         | 250        | 임대주택 |
|     |     | -      | 8,000       | 182         | 515        | 110               | 20          | 25          | 50         | 250        | 분양주택 |
|     | A-2 | -      | 47,309      | 1,078       | 3,051      | 110               | 20          | 25          | 50         | 250        | 분양주택 |
|     | A-3 | -      | 39,138      | 890         | 2,519      | 110               | 20          | 25          | 50         | 250        | 임대주택 |
|     | A-4 | -      | 35,558      | 808         | 2,287      | 110               | 20          | 25          | 50         | 250        | 분양주택 |

※ 1) 평균분양면적 및 A-1블록의 임대, 분양간 대지면적은 세대수 등 계획지표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사항임.

<별표3> 일반상업용지 용도분류표

| 구분                   | 구분              | 구분                                      |   |  |
|----------------------|-----------------|---|---|--|
|                      |                 | 간선부                                     |   | 이면부  |
|                      |                 | C1                                      | C2                                      | C3   |
| 용도                   | C1              |   | C2                                      | C3   |
| 블록                   | C1-1 ~ C1-6     |   | C2-1 ~ C2-3                             | C3-1 ~ C3-6                                  |
| 영업<br>및<br>판매<br>시설군 | 위락시설            | X                                       | X                                       | ○<br>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br>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한함 |
|                      | 판매시설            | ●<br>당해용도상 바닥면적 합계가<br>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 제외 | ●<br>당해용도상 바닥면적 합계가<br>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 제외 | ●<br>당해용도상 바닥면적 합계가<br>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 제외      |
|                      | 숙박시설            | X                                       | X                                       | X  |
| 문화<br>및<br>집회<br>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br>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 ○                                       | ○  |
|                      | 종교시설            | X                                       | X                                       | X  |
|                      | 운동시설            | ◇<br>육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br>육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br>육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                      | 관광휴게시설          | X                                       | X                                       | X  |
| 산업<br>시설군            | 운수시설            | X                                       | X                                       | X  |
|                      | 공장              | X                                       | X                                       | X  |
|                      | 위험물저장 및<br>처리시설 | X                                       | X                                       | X  |
|                      | 자동차관련시설         | ◇<br>주차장에 한함                            | ◇<br>주차장에 한함                            | ◇<br>주차장에 한함                                 |
|                      | 분묘 및<br>쓰레기처리시설 | X                                       | X                                       | X  |
| 창고시설                 | X               | X                                       | X                                       |  |

<별 표3> 일반상업용지 용도분류표

| 구 분                  |             | 간선부                              |                                  | 이면부                              |  |             |  |
|----------------------|-------------|----------------------------------|----------------------------------|----------------------------------|--|-------------|--|
|                      |             | C1                               |                                  | C2                               |  | C3          |  |
| 용 도                  |             | C1-1 ~ C1-6                      |                                  | C2-1 ~ C2-3                      |  | C3-1 ~ C3-6 |  |
| 블 록                  |             | C1-1 ~ C1-6                      |                                  | C2-1 ~ C2-3                      |  | C3-1 ~ C3-6 |  |
| 교육<br>및<br>의료<br>시설군 | 교육연구시설      | ◇<br>직업훈련소 및 학원에 한함              | ◆<br>직업훈련소 및 학원에 한함              | ◇<br>직업훈련소 및 학원에 한함              |  |             |  |
|                      | 노유자시설       | X                                | X                                | X                                |  |             |  |
|                      | 수련시설        | X                                | X                                | X                                |  |             |  |
|                      | 의료시설        | ●<br>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br>한방병원에 한함 | ○<br>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br>한방병원에 한함 | ○<br>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br>한방병원에 한함 |  |             |  |
| 주거<br>및<br>업무<br>시설군 | 단독주택        | X                                | X                                | X                                |  |             |  |
|                      | 공동주택        | X                                | X                                | X                                |  |             |  |
|                      | 업무시설        | ●                                | ●                                | ●                                |  |             |  |
|                      | 방송통신시설      | ○<br>방송국, 전신전화국 및<br>통신용시설에 한함   | ○<br>방송국, 전신전화국 및<br>통신용시설에 한함   | ○<br>방송국, 전신전화국 및<br>통신용시설에 한함   |  |             |  |
| 기타<br>시설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 ○                                |  |             |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br>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br>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                                |  |             |  |
|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X                                | X                                | X                                |  |             |  |
|                      | 교정 및 군사시설   | X                                | X                                | X                                |  |             |  |
|                      | 발전시설        | X                                | X                                | X                                |  |             |  |
|                      | 묘지관련시설      | X                                | X                                | X                                |  |             |  |
|                      | 장례식장        | X                                | X                                | X                                |  |             |  |

주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권장), ◇: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권장), X: 불허용도

주2) 상업용지의 경우 주상복합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불허용도임.

주3)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별표1> 및 <그림1>참조)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산시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1-1173호

### 제238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8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부 의 안 건 -

| 연번 | 안 건 명  |
|----|--|
| 1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 2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3  |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4  | 군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 5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 6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 7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 8  |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구축 출연금 동의안                    |
| 9  |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운영사업 출연금 동의안                   |
| 10 | 군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1 | 군산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2 |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3 |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4 |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15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 16 |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7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8 | 군산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19 | 군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1 |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 6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21-1191호

## -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군산시에서는 2022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세(균등분)를 재원으로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2021년 6월 7일

군 산 시 장



1. 신청자격 : 군산시민 누구나
2. 신청기간 : 2021. 6. 7.(월) ~ 7. 9.(금) 18:00까지
3. 대상사업 : 시 전체 시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당해 연도 내 사업완료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주민갈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종교단체의 교리전파 목적 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이거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타기관(교육청, 경찰서 등) 소관 사업, 지방보조금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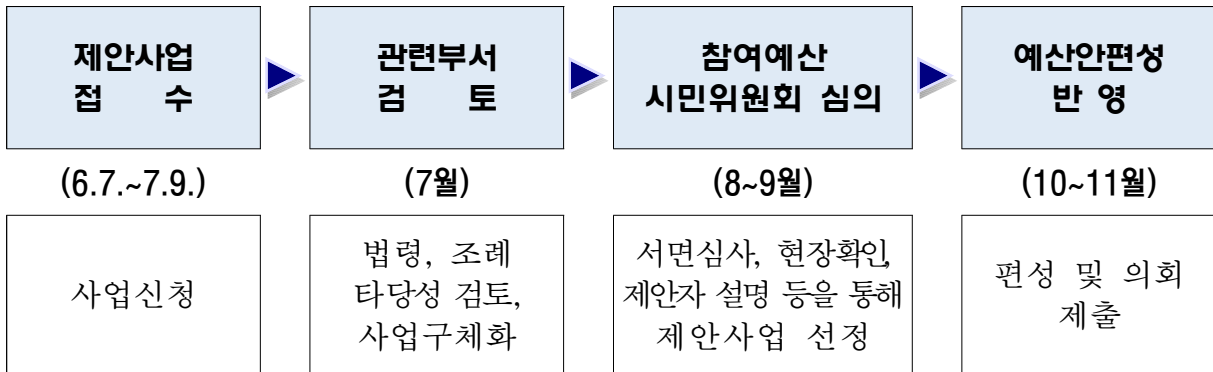
4. 참여방법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접수
  - 방문접수 : 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
  - 우편접수 : 우54078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5층 기획예산과
  - 온라인접수 : 시 홈페이지(<http://gunsan.go.kr>) 접속 -> 시민광장 플랫폼 -> 참여예산 -> 시민참여예산사업공모

5. 제출서류

가. 제안사업 신청서 (붙임서식)

나. 현장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추가자료

6. 제안사업 선정절차



7. 유의사항

가.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063-454-2315)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

## ○ 사업 제안자

|       |                        |       |  |
|-------|------------------------|-------|--|
| 신 청 인 | ※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성명 기재 | 연 락 처 |  |
| 주 소   |                        |       |  |

## ○ 제안사업

|         |   |
|---------|---|
| 사 업 명   |   |
| 사 업 위 치 |   |
| 사 업 비   | 천원  |
| 필 요 성   |   |
| 사 업 내 용 |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br>※ 필요한 경우 현황 사진 및 위치도 첨부 |
| 기 대 효 과 |   |

2021.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민 제안사업 확인을 위해 수집 이용됩니다. (사업제안에 대한 문의 등)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기본 2년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제안신청이 제한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군산시 공고 제2021-1193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구암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수취인 주소·거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군 산 시 장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구암소하천 정비사업
- 나. 위    치 : 군산시 조촌동 동군산병원 ~ 구암 배수펌프장
- 다. 내    용 : 하천정비 L=1,250m, B=23m, 교량 2개소 등
- 라. 시 행 자 : 군산시장(안전총괄과장)
- 마. 사업기간 : 2018. 1. ~ 2022. 12

2. 공고기간 : 2021. 6. 4. ~ 6. 18.(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 홈페이지 게시

## 4. 공시송달 대상

| 소재지 | 지 번    |        | 지목 | 면적(m <sup>2</sup> ) |     | 단가(원)   | 사정액(원)      | 소 유 자    |     | 비고     |
|-----|--------|--------|----|---------------------|-----|---------|-------------|----------|-----|--------|
|     | 분할전    | 분할후    |    | 당초                  | 편입  |         |             | 주 소      | 성 명 |        |
| 구암동 | 507-11 | 507-16 | 대  | 2,255               | 388 | 565,000 | 219,220,000 | 군산시 영동 5 | 장경산 | 토지 소유자 |